

발간등록번호

11-1270000-000612-01

INVESTMENT & BUSINESS GUIDE

★ 베트남 I 투자 · 조세 · 노무

Investment & Business Guide

해외진출 우리기업을 위한 사례중심 현지법령해설서

베트남 I 베트남 투자 · 조세 · 노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 없는 짧은 기간 동안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고, 올해 11월에는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는 등 비약적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성장은 부족한 자원과 좁은 국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로 뻗어나간 우리 기업인들의 치열한 노력과 진취적인 도전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1980년 약 5천만 달러에 불과하던 해외투자는 30년이 지난 지금 1,444억 달러로 늘어나고, 해외진출 기업수는 46,000여개에 달하게 되었으며, 노동 집약적 산업에 치중되었던 해외투자는 최근 자원개발, 고부가가치 산업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해외진출 현장 기업인들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지의 부동산, 노무, 세무 분야 법령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피해를 보았다고 호소하는 등 해외투자 기업들이 낮은 법령과 제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법무부는 해외진출 기업이 겪는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중국의 창업·투자, 세무, 공정거래, 베트남의 노무·투자, 부동산·건축 등 2개국 5권의 국가별 비즈니스 가이드의 발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간하는 비즈니스 가이드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현지 법령 정보와 구체적 자문사례 등을 담은 귀중한 자료입니다.

이미 해외에 진출하여 있거나 새로이 해외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이 반드시 참고하고 알아두어야 할 체크 포인트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현지 법제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비즈니스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증보해 나가는 한편 러시아, CIS 국가, 중남미, 중동 국가 등에 대한 비즈니스 가이드도 새롭게 발간할 예정입니다.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집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로펌의 변호사분들을 비롯하여 본서의 기획 및 발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준 국제법무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0. 10.

법무부장관 이 지 남

목·차

제1장 _ 투자법	8
제2장 _ 기업법	13
제3장 _ 토지 및 건축	19
제4장 _ 담보 거래	31
제5장 _ 조세	34

제6장 _ 노무관리	55
제7장 _ 경쟁법	63
제8장 _ 지적재산권	68
제9장 _ 도산법	73
제10장 _ 분쟁 해결	80

제1장 _ 투자법

베트남 국회는 투자 및 법률 환경을 개선시키고 투자 법률 체계를 통합하기 위하여 2005년 11월 29일 투자법을 제정하였다. 새로운 투자법은 1987년에 제정된 외국인 투자법을 대체하는 것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내국인 및 외국인의 투자 활동 전반에 관한 법으로서 기업법, 상법 및 기타 법령들과 함께 사업 활동과 투자 활동을 규율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투자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Decree No.108/2006/ND-CP과 Decision No 1088/2006/QĐ-BKH과 같은 규정들을 제정하였으며, 이러한 규정들은 베트남에서 이루어지는 투자 활동의 절차, 제출 서류, 투자자의 권리, 의무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업법에 의한 규율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의 투자활동을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회사의 설립 및 운영은 기업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1. 투자 일반

외국인 투자자들은 베트남의 투자허가기관으로부터 투자허가증을 취득하여야 베트남에서의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법에 따라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모든 분야에 투자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투자 사업 규모와 분야에 따라 상이한 등록 및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투자 분야

투자법에 따라, 투자자들은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모든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데, 투자금지분야는 사회와 공공에 해가 되는 사업이 주요한 대상이다. 투자법은 투자제한분야와 투자촉진분야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투자제한분야는 정부에서 부과하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투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형태를 합작 기업 형태로 하도록 하거나, 외국인 소유지분을 일정한 비율(51%)까지만 허용한다든지, 총 투자금 중 법정자본금의 비중이 일정한 비율 이상(예를 들면 20% 이상)이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법령이나 허가기관의 판단에 따라 부과될 수 있다. 투자촉진분야 또는 투자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관련 세법에 따라 우대 세율, 세금 감면, 토지사용기간(보통 50년)의 연장(70년) 또는 토지사용료의 감면 등의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투자인센티브의 확정적 보장을 위해서는 그러한 인센티브 내용이 명시된 투자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투자금지분야	• 국방, 국가안보 및 공공의 이익에 해가 되는 사업 • 베트남의 역사적 및 문화적 전통, 윤리와 관습에 해가 되는 사업 • 국민 건강을 해치거나 자원 및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 • 베트남에 수입되는 유독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 및 국제법이 금지하는 유독성 화학물의 제조사업
투자제한분야	• 사회질서, 안전 및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 은행 및 금융 사업 • 공중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 문화, 정보, 언론 및 출판 사업 •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사업 • 부동산 사업 • 천연자원의 조사, 탐사 및 채굴 사업 • 교육 및 훈련 개발 사업 • 기타 법이 규정하는 사업
투자촉진분야 또는 투자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지역	• 새로운 에너지 생산 사업 • 농림산품의 생산 및 가공 등의 사업 • 첨단 기술의 사용, 연구 및 개발 사업 • 대규모 노동력을 사용하는 사업(사회간접자본시설 및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의 건설과 개발 사업 / 교육, 훈련, 보건, 스포츠, 문화 등의 개발 사업) • 전통공예 사업 • 기타 인센티브가 필요한 제조 및 서비스 사업 • 어려운 사회 경제적 여건을 가진 지역 및 산업특구, 수출가공특구, 첨단기술특구 및 경제특구 지역

3. 투자형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형태는 투자방식에 따라 직접투자, 간접투자의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두 투자형태의 차이는 분명하지 않지만, 투자활동에 직접 참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가. 간접투자형태

간접투자는 투자자가 영업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며 지분, 주식, 채권, 기타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증권투자펀드 및 기타 금융중개기관을 통하여 투자하는 것인데, 주로 투자법 및 증권법 등에서 이러한 간접 투자 활동을 규율하고 있다.

상장된 베트남 회사(외국인 직접 투자회사 제외)의 주식 중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은 개별 상장회사 주식의 49%에 한정된다는 제한이 있으며, 최근에 공개 주식회사의 주식, 공모펀드의 수익증권의 경우에도 49%까지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다는 수상결정이 제정되었다. 한편, 공개 주식회사에는 (i) 상장회사 이외에도, (ii) 공모 방법으로 설립(모집설립 방법)된 주식회사와

(iii) 주주가 100명 이상이고, 자본금이 100억 베트남 동 이상인 주식회사가 포함된다.

나. 직접투자형태

투자법이 규정하고 있는 직접 투자 방식은 다음과 같다.

- (1) 100% 외국인투자회사
- (2) 합작투자회사(JVC)
- (3) 사업협력계약(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BCC), 건설-운영-이전(Build-Operate-Transfer, BOT) 계약, 건설-이전-운영(Build-Transfer-Operate, BTO) 계약 및 건설-이전(Build-Transfer, BT) 계약
- (4) 사업개발투자
- (5) 투자활동에 직접 참여를 위한 자본 또는 주식의 매입
- (6) 기업의 인수 합병을 위한 투자
- (7) 기타 형태의 직접 투자

4. 투자허가증 발급 절차

가. 투자 등록 및 투자 승인

투자 제한 분야(아래에서 설명한다)에 해당되지 않는 3,000억 베트남 동(VND)(약 한화 177억 원) 미만 투자 금액의 외국인 투자 사업은 투자 등록 및 투자증명서의 발급을 필요로 한다. 투자증명서는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의 기능도 가지게 된다.

3,000억 베트남동(약 한화 177억원) 이상 투자 하는 사업이나 투자 제한 분야에 투자하는 사업은 허가당국 및 기타 관련 당국으로부터 투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투자금	3,000억 VND미만		3,000억 VND이상	
조건부 투자분야	×	○	×	○
절차	단순등록절차	심사 절차		
제출서류	• 신청서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은행잔고 증명) • JVA, BCC (있는 경우) • 사업등록서류	• 투자 등록 서류 • 투자 제한 조건 준수 설명서	• 투자 등록 서류 • 경제 · 기술 설명서	• 투자 등록 서류 • 투자 제한 조건 준수 설명서 • 경제 · 기술 설명서
법정 소요기간	15영업일 이내	• 수상 승인 필요 경우 : 37영업일 • 수상 승인 불필요 경우 : 20영업일(산업단지), 25영업일(인민위원회)		

투자 등록의 경우 허가당국은 신청서 일체를 받은 후 15영업일 이내에 투자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투자 승인의 경우 투자허가증을 발급 받는 데 25영업일(산업단지 등에서는 20영업일)이 소요되고 총리의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약 37영업일이 소요된다. 다만, 위 기간은 실무상 연장될 수 있다.

나. 투자허가기관

수상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를 제외하면, 산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및 경제단지에서 수행될 사업의 경우에는 각 단지의 관리위원회(Board of Management)가 투자허가증 발급 기관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성급 인민위원회(Provincial People's Committee)가 투자허가증 발급을 담당하고 있다. 투자허가증 발급 신청서는 위 투자허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허가기관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정부기관들과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투자허가증을 발급한다. 일부 민감한 사업은 투자허가증 발급 이전에 베트남 수상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다음의 분야에 속하는 사업

- 공항의 건설 및 경영, 항공 운송업
- 국립 항구의 건설 및 경영
- 석유 탐사, 생산 및 가공, 광물의 탐사 및 채굴
-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 카지노의 경영
- 담배 제조
- 대학교육기관의 설립
- 산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및 경제단지의 설립

(2) 다음의 분야에 속하며, 총투자금이 1조 5,000억 베트남 동(VND)이상인 사업

- 전력 사업, 광물 가공업, 금속 제련업
- 철로, 도로, 수로 등 인프라 건설 사업
- 주류, 맥주의 제조 및 관련 사업

(3) 다음 분야에 속하며, 외국인 자본이 투자된 사업

- 해상운송업
- 우편, 통신 및 인터넷망 구축 및 서비스 공급, 전파 전송망 구축
- 신문 및 책자의 인쇄업, 출판업
- 독립과학연구기관의 설립

5. 자본금 요건 및 투자 자본의 회수

가. 최소 자본금 요건 등

구 외국인투자법에 의하면, 총투자금은 정관자본금과 차입자본금(해외 또는 현지 대출 불문)으로 구성되고, 정관자본금은 총투자금의 최소 30%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었다. 그러나, 투자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투자금에 대한 자본금의 최소비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투자법이 효력을 발생한 현재에는 최소 정관자본금 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외국인 투자자는 자본과 대출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하여 투자할 수 있다. 다만, 투자제한분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허가 관청에서 정관자본금의 최소 비율 충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동산 개발사업이나 증권업의 경우와 같이 법정 최소자본금을 요구하는 분야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베트남에 설립된 기업이 외국으로부터 만기 1년 초과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베트남 중앙은행(State Bank of Vietnam)에 외채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외채의 인출과 상환은 외채 등록 이후에만 가능하므로 외채등록은 상환을 보장하는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외채 도입 전에 자본금이 전액 납입되어야 한다는 제한은 없으나, 자본금이 전액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 납부와 관련하여 이자 부분을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제한이 있으므로 절세를 위하여 외채 도입 전에 자본금을 완납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투자자본의 회수

투자법은 세금을 납부한 뒤의 영업 이익, 기술료 및 서비스료, 지적재산권의 대가, 대출의 원리금, 청산 후의 잔여재산 및 기타 금전 또는 재산의 해외 송금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 형태로 투자된 자금은 청산 전에 조기에 회수될 수 없으며,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배당의 형태로 이익을 가져 오는 것은 가능하다.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5%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베트남 법령상 외채에 대한 법정 최고 이율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관자본금의 최소 비율을 허가 관청이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의 비율을 늘려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 받는 방법으로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베트남 중앙은행이 외채 등록 시에 이자의 상환에 대한 창구 지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상환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다. 이자 및 비용에 대하여 10% (개인의 경우 5%)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된다.

청산 이후에는 잔여재산을 회수할 수 있는데 청산은 투자허가증에 명시된 사업기간이 종료한 경우에 가능하며, 그 이전에는 투자 허가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_ 기업법

1. 회사의 형태

베트남 통합기업법(“기업법”)은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주식회사(share-holding company), 합자회사(Partnership) 및 개인기업(private enterprises) 등 4가지 기업형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 투자함에 있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투자자의 무한책임이 요구되는 합자회사나 개인기업의 형태보다는 투자액을 한도로 하여 투자자의 책임이 한정되는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의 형태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Board of Directors)가 강제되지 않고, 사원이 50인을 넘을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지분의 양도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다르다. 유한책임회사는 1인 사원 유한책임회사와 사원이 2인 이상인 유한책임회사가 있는데, 1인 사원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1인의 외국인 투자자가 다른 사원들과의 관계, 사원 총회의 정족수 및 결의 방법 등에 대한 제약 없이 기업에 대한 완전한 지배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한편, 베트남 투자자와 합작투자를 위하여 사원이 2인 이상인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베트남 파트너가 회사 지분을 매각하고자 할 때 외국인 투자자가 우선매수권을 가지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합작 투자 상대방의 임의적인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유한책임회사는 기업 운영을 위한 절차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회사의 소유 구조가 폐쇄 적이라는 점에서 소수의 지분권자들로 구성된 회사를 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선호된다.

반면, 주식회사는 주주가 3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으나, 신주 발행을 통한 증자를 할 수 있고,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따라서, 불확실한 시장을 시험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주식회사 형태가 유리하다.

2. 유한책임회사의 기관 및 운영

가. 유한책임회사의 기관

2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총회, 사원총회 의장, 사장(General Director) 또는 이사(Director)를 둔다. 11인 이상의 사원들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는 반드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11명 미만으로 구성된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의 판단에 의해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1인 사원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아닌 1명 내지 3명의 감사를 임명할 수 있다.

사원총회의 의장 및 사장(General Director) 중 1인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법적 대표(Legal Representative)가 된다. 법적 대표는 베트남에 상주하여야 하고, 30일 이상 베트남

을 떠나 있는 경우에는 법적 대표의 권리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관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서면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회사의 법적 대표가 되는 경우 법적 대표는 대표직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베트남에 거주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임시 주소를 등록하여야 한다.

(1) 사원총회

사원총회는 유한책임회사의 집행기관이자 의사결정기관이다. 사원총회는 모든 사원으로 구성되며, 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을 지명하여야 한다. 각 사원은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보유하며, 대리인은 사원으로부터 위임 받은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2) 사원총회 의장

사원총회는 사원총회의 구성원(사원 또는 대리인) 중에서 사원총회 의장을 선출한다. 사원총회 의장은 회사의 사장(General Director)를 겸직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재임이 가능하다. 의장의 권리 및 의무는 대부분 사원총회 회의의 절차적인 사항과 관련된다.

(3) 사장(General Director)

사장은 회사의 일반 운영을 책임지며 사원총회를 위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4) 감사위원회(Board of Supervisors)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기업법에서 감사위원회의 권리, 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사원총회의 결의

기업법은 회사의 의사 결정의 유연성에 장애가 되었던 종전의 만장일치제를 폐지하였다. 또한 정족수 교착상태(Quorum Deadlock)를 제거하기 위하여, 의사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 세 번의 사원총회가 일정한 간격으로 연속하여 열리도록 하고, 최종 개최되는 사원총회는 의사 정족수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의결 정족수	의결 정족수	
	보통 결의	특별 결의
• 첫번째 회의 : 출자자본의 75% • 두번째 회의 : 첫번째 회의 이후 15일 이내, 출자자본의 50% • 세번째 회의 : 두번째 회의 이후 10 영업일 이내, 의사 정족수 불필요	• 출석한 사원의 출자 자본의 65%	• 출석한 사원의 출자 자본의 75% (기업 총 자산의 50% 이상을 매각, 회사정리 또는 해산 결의 등)

사원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보통 결의와 특별 결의로 그 결의 대상에 따라 다른 요건을 가지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작투자 형태의 베트남 투자를 계획하는 경우, 아래에서의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지분권을 보유하여야 회사의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신속하게 할 수 있다.

다. 지분 양도

유한책임회사의 투자자는 출자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먼저 양도하고자 하는 조건과 동일한 조건(즉, 가격)으로 다른 사원들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 비율만큼 양도 대상 출자지분을 매입할 것을 제안하고, 30일 안에 다른 사원들이 매입하지 않은 출자지분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3. 주식회사의 기관 및 운영

가. 주식회사의 기관

베트남 기업법상 주식회사는 최소 3인의 주주가 있어야 하나 주주의 수의 상한에는 제한이 없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Shareholders' Meeting), 이사회(Board of Director), 사장(General Director) 또는 이사(Director) 등의 기관으로 구성된다. 개인 주주가 11명 초과이거나, 50% 초과 주식의 보유를 하고 있는 법인 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Board of Supervisors)를 두어야 한다. 이사회의 의장, 이사(Director) 또는 사장(General Director) 중 1인이 정관에 정함에 따라 회사의 법적 대표(Legal Representative)가 된다. 법적 대표는 베트남에 상주하여야 하고, 30일 이상 베트남을 떠나 있는 경우에는 법적 대표의 권리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관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서면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회사의 법적 대표가 되는 경우, 법적 대표는 대표직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베트남에 거주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임시 주소를 등록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주주가 주식회사의 최고 의결 기구인 주주총회의 구성원이 된다. 주주총회는 정기 주주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으며,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개최되어야 하며, 반드시 베트남 영토 내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정기 주주총회는 회계 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는 법률과 정관에 정한 경우에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의무가 있다.

(2) 이사회

이사회는 정관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최소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집행한다. 이사회는 정기 또는 비정기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본사 또는 기타 장소에서 개최될 수 있으며, 정기 회의는 최소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개최되어야 한다. 이사는 1인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3) 이사회 의장

이사회 의장은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 의하여 선출되며, 이사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뿐 아니라 주주총회를 주재한다. 이사회 의장은 정관에 다르게 정함이 없는 경우, 이사(Director) 또는 사장(General Director)를 겸직할 수 있다.

(4) 이사(Director) 또는 사장(General Director)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 또는 회사 외부인 중에서 회사의 이사(Director) 또는 사장(General Director)를 임명하여야 한다. 정관에서 이사회 의장을 회사의 법적 대표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이사(Director) 또는 사장(General Director)이 회사의 법적 대표가 된다. 이사(Director) 또는 사장(General Director)은 이사회의 감독하에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집행하며, 부여된 권한과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이사회에 책임을 져야 한다.

(5) 감사위원회(Board of Supervisors)

감사위원회는 회사 정관에 달리 정하지 않는 경우 3명 내지 5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임명하며, 감사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베트남 영주권자이어야 하고, 이 중 적어도 1인은 회계사여야 한다. 감사위원은 주주나 회사의 직원 중에서 선출될 필요는 없다.

나.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1) 주주총회의 결의

주주총회는 최소한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6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참석하여야 개최될 수 있다. 위 비율이 충족되지 않아 총회가 개최되지 못한 경우, 당초 총회 개최 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두 번째 총회가 개최되며, 최소한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51%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참석하여야 한다. 만약 두 번째 총회마저 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무산되는 경우, 두 번째 총회 개최 예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 번째 총회가 개최되며, 이때에는 참석 주주의 수와 상관없이 총회가 진행될 수 있다.

한편, 기업법에 의하면, 주주총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65%이상의 수로써 결의하게 된다.

다만, 주식 종류 및 각 종류의 주식의 총수의 결정, 정관의 개정 및 보안, 회사의 구조 개편 및 해산 결정, 최근 작성된 회사 재무제표에 기록된 총 자산의 50% 이상(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각 또는 투자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75%이상의 수로써 결의하여야 한다.

의사 정족수	의결 정족수	
	보통 결의	특별 결의
• 첫번째 회의 : 의결권 있는 주식의 65% • 두번째 회의 : 첫번째 회의 이후 30일 이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1% • 세번째 회의 : 두번째 회의 이후 20 영업일 이내, 의사 정족수 불필요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65%	• 출석한 사원의 출자 자본의 75% (기업 총 자산의 50% 이상을 매각, 회사정리 또는 해산 결의 등)

(2) 이사회 결의

이사회는 이사회 총 구성원의 3/4이 출석하여야 진행될 수 있고, 참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최종 의사 결정권을 가지며(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사회는 투표나 서면 또는 회사 정관이 정한 다른 방법으로 결의할 수 있다. 한편, 이사회의 회의 내용은 반드시 의사록에 기록되어야 하며, 베트남어와 외국어로 작성될 수 있는데, 각 회의록의 효력에는 차이가 없다.

다. 주식의 양도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식을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의결 우선주의 경우에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창립주주의 경우에는 회사 설립일로부터 3년 동안은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창립주주가 아닌 타인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는 제한이 따른다.

4. 회사 운영과 관련된 기타 주요 내용

가. WTO 기준의 적용

외국인 투자자가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의 사업 분야가 WTO 협약에 따른 시장개방 일정 에 포함된 사업인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i) 의사 정족수, (ii)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 (iii)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요건 등을 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 사업 분야에 해당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출석한 사원 또는 주주의 65%(보통 결의) 또는 75%(특별 결의)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기업법상의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요건을 회사 정관에서 출석한 사원 또는 주주의 51% 이상의 결의 등으로 완화하여 규정할 수 있다.

나. 배당

회사는 영업으로 이익이 발생하고 베트남 법률에 따른 납세 및 기타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야 배당할 수 있다. 만일 배당 예정일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 및 기타 재산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배당 예정일 이후에 이를 전부 지급할 수 있는 때에만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및 주식회사의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배당금은 현금, 회사 주식 또는 회사 정관에서 정한 기타 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현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베트남 동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대표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베트남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i) 본사가 설립일 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최소 1년 간 운영되고 있을 것, (ii) 사업자등록증상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이 요구됩니다. 대표사무소의 설립 목적은 현지 시장조사, 마케팅 홍보 등 본사의 시장 개척을 위한 보조 업무로 제한됩니다. 일반적인 대표사무소의 설립은 무역부(Ministry of Trade, MOT)에서 허가하고 있으며, 베트남 대표사무소의 존속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하나,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표사무소 설립 절차

통상적으로 대표사무소 설립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데에 4주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번 건은 본사가 홍콩에 있어서 본사 관련 서류들이 영문으로 되어 있으므로, 신청 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법한 설립 신청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하고 설립 허가증을 발급하여 주는 것으로 법정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보다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나,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적법한 설립 신청 서류를 제출한 때로부터 3주 이내에 설립 허가증이 발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표사무소 설립 후속 절차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증을 받으면, 대표사무소 설립 공고(일간지), 인감 등록, 은행계좌 개설, 운영 개시 통지, Tax Code 등록 등의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인감 등록에 약 3영업일, 운영개시 통지 후 확인서 수령에 약 7영업일 정도가 소요되며, Tax Code는 등록 신청 서류 제출 후 35영업일 안에 발급하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후속 절차 진행에 전체적으로 짧게는 1달에서 길게는 2달 정도가 소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3장 _ 토지 및 건축

1. 토지제도 일반

가. 토지 및 토지사용권

베트남 토지법에 의하면, 토지는 대표 소유자인 국가와 함께 전 국민(베트남 국민)에게 속한다. 다시 말해 베트남에는 개인토지소유권의 개념이 없으며, 개인 및 조직은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토지사용권리만을 가진다.

한편, 토지는 사용목적에 따라 크게 농업 토지와 비농업 토지로 구별되며, 국가는 토지사용 목적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토지 사용자는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나. 토지의 임대 및 할당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베트남에는 개인소유의 토지가 존재하지 않고, 토지 사용자는 국가로부터 임대 또는 할당 (allocation) 의 형태로 토지사용권을 부여 받아야 한다. 토지의 할당은 국가가 행정결정으로 토지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토지의 임대는 국가와의 임대차계약을 기초로 하여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외국 투자자들은 임대의 형태로만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다. 토지사용권증서

토지사용권증서(Land Use Right Certificate)는 국가가 현재 토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토지사용권에 대한 국가의 인증서이다. 실무상 이러한 증명서는 “Red Book”이라고 불려진다. 이외는 별도로 종전에는 “Red Book”과 구분하여 건물에 대한 소유권증서(Construction Ownership Certificate)를 나타내는 “Pink Book”이 발급되었다. 그러나 2009년 6월 19일 제정되고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건설투자관련법 개정안(“Law38/2009/QH12”)에 따라 “Pink Book”은 “Red Book”으로 통합되었다. 따라서 자연자원환경부(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 and Environment)에서 발급하던 “Red Book”과 건설부(Department of Construction)에서 발급하였던 “Pink Book”은 모두 자연자원환경부에서 통합된 “Red Book”의 형태로 발급하게 된다. 통합된 “Red Book”의 새로운 명칭은 “토지사용권 및 건설, 기타 자산의 소유권 증서(Certificate of Land Use Right and Ownership of Construction and Other Assets)”이다.

건설투자관련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일 이전에 발급받은 “Red Book”과 “Pink Book”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구법 하에서 “Red Book” 또는 “Pink Book”을 받은 자가 통합된 “Red Book”으로 변경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다만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정부에서는 무상으로 기존에 발급받

있던 “Red Book” 또는 “Pink Book”을 통합된 양식의 “Red Book”으로 발급하여 준다. 당연히 새로운 건에 대하여 “Pink Book”은 더 이상 발급되지 않는다.

2. 외국인 투자자의 토지사용권 취득

토지법은 베트남 기업들은 제3자로부터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외국 투자자가 제3자로부터의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i) 합작기업의 현지 당사자가 토지사용권 형태로 자본을 출자하거나, (ii) 국가 또는 일부 허가된 토지사용권 보유자로부터 직접 토지를 임차함으로써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가. 합작회사에 대한 베트남 당사자의 토지 출자

합작회사에 대하여 베트남 당사자는 시 또는 성급 인민위원회로부터 토지의 “할당”을 받고, 토지 할당에 대한 모든 토지사용료를 지급한 후에 토지사용권의 형태로 자본을 출자할 수 있다. 단, 토지사용료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해당 인민위원회의 서면 허가가 있어야만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토지사용권의 출자가 허용된다.

나. 토지 임대

외국인이 토지를 임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i)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차하는 방법, (ii) 국가가 아닌 기관 또는 개인(외국기관 또는 개인 포함)으로부터 산업단지, 첨단기술단지 또는 경제단지 안에 있는 토지를 기반시설과 함께 재임대 받는 방법이 있다.

임대 기간은 승인된 프로젝트의 기간과 일치해야 하며, 50년(혹은 특별한 경우에 7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임대 기간의 연장은 종결 시 임차인이 토지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할 경우 정부에 의해 허가될 수 있으나, 임차인은 토지사용 기간 동안 토지 규정을 따라야 하고, 토지의 사용은 승인된 토지 계획과 일치하여야 한다.

다. 임대 받은 토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외국인 투자자의 토지사용권은 임대료의 지급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토지를 정부로부터 임차하는 경우, 토지법은 토지임대료 지급 방법으로 (i) 연단위 임대료 지급(이하 “연단위 지급”) 및 (ii) 전체 임대차기간에 대한 일괄 임대료 지급(이하 “일괄 지급”) 등 2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연단위 지급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토지의 사용만을 할 수 있으며 토지사용권의 양도, 전대 또는 이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다. 반면에 “일괄 지급” 제도에 의하여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추가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

- (1)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을 양도할 권리
 (“연단위 지급”을 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토지에 부속된 자산만을 양도할 수 있음)
- (2) 토지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을 전대할 권리(단, 별도 허가 필요)
- (3)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을 합작 기업의 자본으로 출자할 권리 (단, 별도 허가 필요)
- (4) 임대차기간 동안 토지사용권과 자산을 베트남 금융 기관을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권리

3. 토지 가격 및 토지 회수

가. 토지 가격

베트남에는 토지의 개인 소유권이 없으므로, ‘토지’ 자체를 매매할 수는 없고, 단지 관련 당사자들간의 토지사용권의 양도만이 가능하다. 또한, 토지사용권 양도에 대한 토지 가격 및 해당 기관에 의해 결정된 토지 가격은 상당히 다르다는 특징을 가진다. 토지사용권의 양도를 위한 시장 가격은 일반적으로 지역 인민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토지 가격보다 훨씬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국가는 토지가격을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토지의 실제 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시가와 큰 차이가 있는 경우 국가는 이 가격을 조정하게 되는데, 지역 인민위원회는 매년 1월 1일 토지 종류에 따라 토지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토지 공시가격은 법률에서 정하는 토지의 최대 가격의 20%이상 또는 최소 가격의 20%이하여서는 안 된다. 지역 인민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토지 가격은 다음의 사항에 대한 기초로 사용된다.

- (1) 토지사용세 및 토지사용권 할당료의 산정
- (2) 공매 또는 입찰 없이 토지를 할당 또는 임대할 경우의 토지사용료 및 토지 임대료 산정
- (3) 토지사용료의 징수 없이 토지가 할당된 경우 토지사용권 가치의 산정
- (4) 국영기업이 민영화와 토지사용료 징수 방식의 토지 할당을 이행할 때, 그러한 국영기업의 자산 가치에 포함된 토지사용권의 가치 결정
- (5) 등록 비용 징수를 위한 토지사용권 금액의 산정
- (6) 국가가 토지를 회수할 경우 보상을 위한 토지사용권 금액 산정
- (7) 토지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에 손해를 일으킨 자가 국가에 배상해야 할 금액의 산정

국가가 토지를 공매 또는 입찰의 형태로 할당 또는 임대할 경우, 프로젝트의 경매 또는 입찰 가

격은 지역 인민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가격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다만, 토지사용권 당사자가 토지사용권을 양도, 임대 또는 전대하거나 또는 토지사용권을 사용하여 자본 출자를 하는 경우에, 토지가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지역 인민위원회가 결정한 토지가격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토지 회수

토지법은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를 포함한 당사자들에게 임대되거나 할당된 토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지가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회수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토지가 비효율적인 방법 또는 부정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 (2) 토지 사용자가 고의로 토지를 훼손하는 경우
- (3) 토지 사용자가 고의로 국가에 대한 재정 부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4) 인도일로부터 연속 12개월 동안 토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 (5) 사업 관련 문서들에 따라 투자자가 당초 약정한 사업의 토지 사용 일정이 정해진 일정보다 24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현재의 투자법에 따르면 법률의 "중대한 위반"은 투자허가 취소 사유인데, 토지 회수의 사유가 되는 위반은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되어 투자허가의 취소 사유가 된다.

국가가 위에 명시된 사유로 재산을 회수한 경우, 토지 사용자는 평가 위원회가 정한 잔여 토지 사용권 대금, 토지 사용료를 포함한 토지에 투자된 자본의 잔여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토지가 다른 사용자에게 할당되거나 임차되는 경우, 불이행 당사자는 잔여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상환 받는다. 토지가 공매절차를 거친 이후 할당되거나 임차되는 경우, 불이행 사용자는 순 공매가 또는 잔여 가치 중 더 낮은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4. 토지사용권에 대한 저당권

토지에 대한 개인 소유가 허용되지 않지만, 베트남에 소재한 금융기관(베트남 소재 외국 은행 지점, 해외 투자 은행/금융회사 포함)이 토지사용권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개인 및 금융기관 이외의 다른 조직은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기타 자산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다. 베트남 국내 담보 대리인이 해외 금융 당사자를 위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한편, 토지사용권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는, 외국인 투자자인 임차인이 전체 임대차 기간에 토지 임대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5. 주택 일반

가. 주택과 다른 건축물과의 구별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은 가족의 거주 및 개인의 거주 및 일상 생활을 위한 건축물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주택 및 다른 건축물과의 차이점은 용도와 그 사용목적에 있다. 주택은 일상 생활 및 사람들의 거주와 관련이 있으므로, 주택에 적용되는 규정은 다른 건축물에 적용되는 것과는 상이한 면이 있다.

상기의 정의로부터 주택은 거주를 위한 모든 종류의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건물 중에 일부가 거주용으로 사용될 경우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주택으로 취급되고, 거주 이외의 다른 목적(상업, 사무실, 호텔 등)으로 사용되는 다른 부분은 주택법에 의해 규율을 받지 않는다.

나. 주택의 종류

주택의 개발 사용 방법에 따라, 주택법은 몇 가지 주택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다.

- (1) 상업용 주택 : 매각 또는 임대를 위해 조직 또는 개인이 투자해서 개발한 주택
- (2) 분리 주택 : 가족, 개인에 의해 건축된 주택
- (3) 공공 주택(social houses) : 공무원, 직업 군인, 경제단지, 공업단지, 수출가공구역, 하이테크 파크의 노동자와 같이 낮은 임금을 받는 특정인들에게 임대 또는 매각하기 위해 국가, 조직 또는 개인들의 투자로 건설된 주택들
- (4) 관저용 주택 : 업무상 공무원의 이전 및 순환을 위해 국가의 투자로 건설된 주택

다. 아파트와 토지사용권증서

- (1) 최초의 토지사용권증서는 개발업자 (즉, 사업자)에게 발행된다.
- (2) 개발업자가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아파트 매수자는 토지의 공동사용권을 포함하는 아파트 소유권증서 (red book)을 발급 받게 되며, 개발업자의 토지사용권증서는 공동 사용권을 반영하여 변경되게 된다.
- (3) 아파트소유권증서 신청을 위하여 개발업자는 아파트를 건설회사로부터 인도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아파트 전체에 대한 서류(프로젝트 관련 서류, 토지사용권증서, 설계도면 등)를 제출하고, 분양계약서에 따라 분양대금 전액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별 아파트 unit에 대한 서류(수분양자의 신청서, 분양계약서, 부동산거래소 관련 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아파트 건물을 공급, 개발하는데 사용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업자에게 별도의 토지사용권증서가 발행될 수 있다.

- (5) 토지가 다수의 아파트 건물을 위한 정원, 운동장, 공공 오락 장소 기타 공공부지로 사용되거나 또는 해당 관리 구역의 국가인민위원회로 양도된 경우 토지사용권증서는 발행되지 않는다.

6. 외국인의 주택 소유

가. 개발업자의 주택소유권

외국인은 그들이 주택 개발업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허가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더불어 외국인 개발업자의 소유권도 그들의 프로젝트에 따라 일부 제한된다. 베트남에서 임대를 위한 주택의 건설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러한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주택 소유권의 기간은 투자허가증에 명시된 기간이며 주택 소유권 증명서에 명시되어있다. 매각용 주택의 건설에 투자하는 외국인 개발업자들은 건축이 종결 된 후에 베트남에서 본인 소유의 주택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택을 매각할 수 있다. 매각용 주택 건설에 투자를 하는 외국인 개발업자는 토지사용 세금을 지급해야 하고, 규정에 명시된 기타 금융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나. 외국인의 주택 소유 - 제한적 허용

2008년 6월 6일에 국회는 외국 기관 및 개인이 베트남에 주택을 구매하거나 소유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 위한 시범 정책으로 Decision No.19/2008/QH12를 승인하였고 이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외국인으로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적법한 주체는 다음과 같다. 다만, 개인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 베트남에 일년 또는 그 이상을 거주하도록 비자 혹은 거주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한하며, 외국 기업의 경우에는 투자허가증 또는 베트남 법에 따라 외국 기업의 투자 활동이 허가된 것을 증명하는 다른 문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

- (1) 투자법에 따라 베트남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외국인 (본인의 투자자본으로 투자활동 경영에 참여하는 인), 또는 베트남 내의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중 관리직 이상에 종사하는 자
- (2) 베트남에 상당한 공헌을 하고 베트남의 대통령이 그 업적에 대하여 훈장을 수여한 외국인, 또는 베트남의 수상이 “특별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한 외국인
- (3) 베트남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고려되는 특정 지식 및 기술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 (4) 베트남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 (5) 그 고용인 또는 직원을 위한 거주용 주택을 필요로 하는 외국 기업(부동산 사업과 관련한 기업은 제외)

그러나, 외국인의 주택 소유권은 베트남인의 소유권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외국인의 주택 소유권에는 몇 가지 제한이 있는데, (i) 외국인은 각 한 채의 아파트만 소유할 수 있으며, (ii) 개인 소유권의 최대 기간은 아파트 소유권 증명서 발행일로부터 50년이고, 기업의 경우에는 투자허가증에 명시된 투자 기간과 동일하다. 그리고, (iii) 매수 후 12개월 이후에만 아파트를 매각할 수 있고, 직접 주거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주택 소유자의 권리, 의무 및 제한 사항

- 외국인 개인은 하나의 아파트만 소유 가능
- 외국인 법인은 다수의 아파트 소유 가능
- 아파트 소유 기간 제한: 개인의 경우 50년, 법인의 경우 투자허가증 상의 투자기간
-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2개월 이후 아파트 매도, 증여 가능
(다만, 더 이상 베트남에 거주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도 가능)
- 유증, 담보 제공 가능
- 거주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사무용으로 사용 금지
- 제3자에게 임대 금지

7. 주택 개발 투자

가. 투자 조건

주택의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개발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1) 투자법에 명시된 투자허가증을 보유할 것
- (2) 20 ha 이하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프로젝트 총 투자의 15% 이상 또는 20 ha 이상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총투자자본의 20% 이상의 정관자본금을 보유할 것
- (3) 법정 자본금 60억동(베트남 동화) 이상을 보유할 것

나. 하자담보책임

주택이 매각을 위한 투자로 건설된 경우 개발업자는 일정 기간 동안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다음 장 건축법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다. 개발 프로젝트에서 주택의 선분양

주택법은 개발업자가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매수인 및 임차인으로부터 자본을 동원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 대금을 선급 받는 것을 허용한다. 투자자가 주택의 매수인 또는 임차인으로부터 분양대금을 선급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설계가 승인되고 주택의 기초 건설이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이 매수인에게 양도되기 전에 동원되는 총 금액은 계약에서 명시된 주택 가격의 7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 밖에 프로젝트 장소에 거주용 주택이 건설되지 않고 프로젝트 부지의 일부를 프로젝트 매각의 형태로 개인에게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나 프로젝트 부지는 후에 프로젝트를 지속하기 위하여 제3의 법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 이러한 양도는 그러나 개발업자가 계획된 바에 따른 기반시설을 완성한 이후에만 허가가 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8. 주택 이외의 건물

가. 주택 이외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외국인의 주택 소유가 제한되는 것과 달리 외국인의 주택 이외의 건물(이하 주택과의 구별을 위하여, “건물”이라 합니다)의 소유는 허용되며 보장된다. 민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자산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나. 건물의 임대

베트남에서 건물 임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공개규정 및 부동산 거래소(real estate trading floor)에 관한 부동산 사업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임대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할 뿐이고, 베트남 정부가 임대 권리에 관한 증명서는 발급하지는 않는다.

다. 건물의 양도

토지 사용자는 토지(건축물 포함)에 부속된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문제는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인은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토지사용권을 동시에 양도해야 한다는 것인데 특히 토지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서 건물의 일부와 함께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명확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건물의 소유주가 건물의 일부를 양도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허용되나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무적으로 건물의 일부 양도가 어려울 수도 있다.

8. 주택 이외의 건물

가. 사업의 범위

부동산 사업은 부동산 개발사업과 부동산 서비스업으로 구성된다. 외국인 투자자가 영위할 수 있는 부동산 개발사업은 (i) 매매, 임대용 주택 및 건물의 건축, 그리고 (ii) 토지의 계량 및 기반 시설을 완성하여 토지를 임대하기 위한 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제한된다. 부동산 서비스업은 부동산 중개, 부동산 평가, 부동산 거래(real estate trading floor),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경매, 부동산 광고 및 부동산 관리 등의 서비스업을 말하는데, 부동산 개발사업과 달리 외국인 투자자들은 모든 해당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나. 부동산 개발사업의 조건

(1) 설립 조건

부동산 개발사업의 경우 회사 설립을 위한 법정 자본금은 60억 베트남동이나, 부동산 서비스업의 경우는 법정 자본금 규정이 없다. 신도시 구역, 거주 구역, 산업 구역의 사회기반 시설 프로젝트 투자자는 프로젝트를 이행하기 위해 다음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가) 신도시 구역 또는 산업 구역의 기술 사회시설 기반 프로젝트의 경우 승인된 프로젝트의 총 투자금의 20퍼센트 이상

(나) 거주 구역 프로젝트의 경우 20 ha 미만을 사용할 경우 승인된 프로젝트 총 투자 금액의 15 퍼센트 이상, 20 ha 이상의 토지를 사용할 경우 승인된 프로젝트의 총 투자금의 20 퍼센트 이상

그리고 해당 사업에 전문자격증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전문 자격증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부동산 중개인 자격증을 가진 적어도 1인 이상이어야 하며, 부동산 평가 서비스를 이행하기 위하여는 부동산 평가 자격증을 가진 적어도 2인 이상이어야 한다. 부동산 거래 서비스(real estate trading floor service)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부동산 중개 자격증을 가진 자가 적어도 2인 이상 필요하다.

(2) 부동산 거래소를 통한 거래

부동산 개발사업자의 주택 및 건축물의 매매, 임대 및 할부 판매는 부동산 거래소(real estate trading floor)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개발업자들은 직접 거래소를 만들거나 또는 거래를 위해 타인의 거래소를 선정할 수 있으나, 거래소의 조건 및 절차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개발업자들은 신문에서 3회 연속으로, 텔레비전에서 1회, 부동산 거래소에서 7일간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공시한 후에 매매, 임대 및 할부 판매계약의 체결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10. 건축 일반

가. 건설종합계획(Construction Master Planning)

건설종합계획은 건설 투자프로젝트 계획의 수립, 건설 조사(Construction Survey), 건축 설계, 시공, 시공 감독, 건설 투자프로젝트의 관리, 건설 계약자의 선정 등을 포함한 모든 건설 활동의 기준이 된다. 건설종합계획은 5년 단위, 10년 단위로 작성되어 장기 발전 방향을 제공하며, 지역건설종합계획, 도시건설종합계획, 농촌·주거지역건설종합계획으로 구분된다.

나. 건설 투자 프로젝트

건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의 경제, 사회에 관한 효과를 검토·평가하기 위하여 건설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건설 투자 프로젝트는 투자 결정 이전에 관할 기관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며, 국가의 중요한 건설 투자 프로젝트는 국회에서 투자에 대한 승인 이후에 정부의 승인이 투자 결정을 하게 된다.

다. 건축 허가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투자허가증과 건축 허가(Construction Permit)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허가를 취득한 후, 일부 예외적인 경우¹⁾를 제외하고는 투자자는 착공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역 및 건설 규모에 따라 각급 인민위원회에서 건축 허가를 발급하며,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건축, 특수 건축, 종교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는 성급 인민위원회(Provincial People's Committee)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건설국이 인민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건축 허가 신청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i) 건축 허가 발급 신청서, (ii) 토지법에 따른 토지 사용권에 관한 서류 사본(공증 필요), (iii) 건축 설계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¹⁾ a) 국가 비밀에 속한 공장, 긴급명령에 따라 건설하는 공장, 주공정건설에 이바지하는 임시공장.

b) 도시를 관통하지 않고 노선에 따라 건설하는 공정이지만,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건설종합계획, 건설 투자프로젝트에 부합하는 공장.

c) 오지, 먼 지역에 속한 규모가 작은 기술인프라 공장.

d) 종합건설계획을 아직 승인 받지 못한 도시에 속하지 않고, 주민집중거주지역, 농촌주민거주지역에 속하지 않은 오지, 먼 지역에 있는 개인단독주택.

e) 건축구조물의 내구성 및 공정 안전을 변경하지 않는 내부 수리, 개조하는 각 공장.

f) 1/500축척의 상세 건축계획을 승인 받은 도시 지역, 산업 단지, 주거 단지를 위한 프로젝트에서의 건축 등.

라. 건설업에 종사하기 위한 능력

베트남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 개인 및 단체는 개인의 경우에는 건축 실행능력을, 단체인 경우에는 건축운영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국가의 건설 관할 기관으로부터 영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실행능력은 법적으로 인정된 전문 훈련기관이 확인하는 해당 개인의 전문자격과 경험 및 직업 윤리를 기초로 등급별로 결정되며, 건축운영능력은 해당 조직 내에 있는 개인들의 건설실행 능력과 해당 단체의 건설업무 경험, 재무상태, 장비 및 경영능력을 기초로 등급별로 결정된다.

마. 건설 활동에서의 계약자의 선정 방법

계약자 선정 방법으로는 일반 경쟁입찰, 제한 입찰, 계약자 지정 방식 등이 있으며, 공사의 규모, 특성, 자금의 출처 등에 따라 계약자 선정 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자의 선정 권한과 책임은 시행사에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입찰이 필요한 경우에도 실제로는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다. 계약자 선정 방법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1) 건설 시공사는 경쟁 입찰에 의하여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2) 건설 자문사, 첨단 기술이 요구되는 건설의 시공사, 건설 활동 및 실무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충족시키는 업체가 소수인 경우에는 제한 입찰 방식으로 선정한다.
- (3) 국가 비밀로 분류되는 공사, 연구 실험 공사, 규모가 작고 간단한 공사, 문화유산의 복구·수선 기타 예외적인 경우에 계약자 지정 방식에 의하여 선정한다.

바. 건설 착공 조건

- (1) 투자자와 건설 시공자 사이에 합의된 일정에 맞추어 건설 부지가 인도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 (2)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 허가가 있어야 한다.
- (3) 건축 설계를 승인 받아야 한다.
- (4) 공사도급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 (5) 시공 일정에 따른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본이 있어야 한다.
- (6) 시공 기간 동안 안전 및 환경 위생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 (7) 신도시 지역의 경우, 기술 인프라 작업이 완료되어야 한다.

사. 건설 하자 보증

건설법은 시설에 대한 하자 보증에 관한 내용으로 건설시공자에 대하여 하자보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하자 보증 기간에 대해서는 설비의 종류 및 등급에 따라 정부가 세부적으로 정하

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법에서는 주택 건설업자의 주택에 대한 보증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보증 책임은 사용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건축물의 하자, 결함 등에 대하여 수리, 교체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보증 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시행사가 주택 사용을 수락하는 서면에 서명한 날로부터 기산된다.

- (1) 9층 이상의 공동 주택, 국가 예산으로 건설된 주택의 경우에는 최소한 60개월 이상
- (2) 4층 이상 8층 이하의 공동의 경우에는 최소한 36개월 이상
- (3) 기타 주택에 대해서는 최소한 24개월 이상

11. 외국 시공사의 시공 허가

외국 시공사가 베트남에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 있으나, 별도의 투자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시공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 프로젝트 마다 관련 기관에서 시공 허가(Contractor's Permit in the Construction Sector)를 받아야 한다.

가. 시공 허가의 조건

베트남 법령에 따라 입찰 또는 지정의 방법으로 시공사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어야 가능하며, 수상(Prime Minister)이 허가하거나 법령에서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베트남 건설회사와 Partnership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도급업체로 베트남 건설회사를 고용 하여야 한다.

나. 시공 허가 신청

시공 허가는 건설 프로젝트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 또는 지역 인민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시공 허가 발급 절차는 적법한 서류를 제출한 후로부터 20영업일 안에 발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외국 건설업체가 시공 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시공 허가 신청서는 반드시 베트남어로 작성 되어야 하고, 나머지 서류들은 원칙적으로 영사 인증을 받아야 한다.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서류는 베트남어로 번역되어 베트남법에 따라 공증을 받아야 한다.

다. Project Office 설립

시공 허가를 발급받은 후, 외국 건설회사는 Project Office를 설립하여야 하며, 해당 건설 사업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인민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주소, 연락 수단, Project Office의 거래 계좌 및 건설 사업 수행의 대표자 등을 관계 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의 경찰서에 Project Office의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4장 _ 담보 거래

1. 담보의 종류

- (1) 질권(Pledge) : 담보권을 설정하면서 담보물을 담보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2) 저당권(Mortgage) : 담보권을 설정하면서 담보물의 이전이 없이, 담보물을 담보권설정자가 점유 · 사용하는 경우
- (3) 예치(Deposit) :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 금은보석 등과 같은 가치 있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이전하여 예치하는 경우
- (4) 에스크로우 계좌(Escrow account) :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 금은보석 등과 같은 가치 있는 물건을 은행의 에스크로우 계좌에 이전하여 예치하는 경우
- (5) 보증(Guarantee)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

구 민법(1995년)은 저당권과 질권을 담보물의 종류에 의하여 구분하여, 부동산에 대한 담보는 저당권, 동산에 대한 담보는 질권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이러한 기준으로 저당권과 질권을 구분하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 법률에 의하면, 질권과 저당권은 담보물을 담보권자에게 이전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베트남에서 영업하는 금융기관만이 토지사용권 및 지상 건물에 대한 담보권 취득이 가능하며, 베트남에서 영업하는 금융기관에는 외국 금융기관의 베트남 지점도 포함된다. 다만, 임차 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토지 사용 전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선불로 완납한 경우라야 토지사용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토지사용권 및 건물에 2순위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저당권설정자가 1순위 저당권자로부터 해당 토지 및 건물과 관련된 토지사용권 및 토지임대차 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관할 토지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인투자회사 등 베트남 소재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이 인정되는데, 이와 관련한 베트남 법령상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주식회사의 경우 주권을 이전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질권의 등록은 질권설정의 요건은 아니지만, 질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한편, 제3자가 물적 담보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며 제3자의 물상보증은 베트남 법률상 보증과 기타의 담보 거래의 2가지 담보 거래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실무상 등록을 담당하는 관계 당국에서는 여전히 하나의 거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담보 계약의 체결

담보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토지법에서 토지사용권에 대한 담보계약서는 공증을 받아 관계 당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계약 체결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원칙적으로 담보계약은 계약서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예외적으로 질권의 경우에는 담보목적물이 질권자에게 이전되는 때부터, 토지사용권, 항공기 또는 선박에 대한 저당권의 경우에는 저당권이 등기·등록되는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담보권의 등록

토지사용권에 대한 저당권, 항공기·선박에 대한 저당권, 하나의 목적물이 여러 채무를 담보하는 경우, 기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담보거래에 대하여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토지사용권, 항공기 또는 선박에 대한 저당권의 경우에는 담보권의 등록이 담보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며, 그 외의 경우에도 담보권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선박에 대한 담보의 등록은 각 지역의 선박등록사무소가, 항공기에 대한 담보는 베트남 민간항공국(Vietnam Civil Department)이, 토지사용권에 대한 저당권 등록은 각 지역 자연자원 환경국(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DONRE) 산하의 토지사용권등록 사무소(Registration Office for Land Use Right)에서 담당한다. 별도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립담보거래등기소(National Registration Agency for Secured Transactions)에 담보권을 등록하여야 한다.

한편, 담보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경우에 따라 다르며,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도 각 담보목적물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4. 담보 실행 절차

담보권의 실행에 대한 법령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령에서는 담보권 실행에 있어서 국가 기관의 참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가 기관들은 이러한 실행 절차를 지원하여 주고 있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당사자들은 담보 실행절차를 당사자가 미리 합의할 수 있으며, 담보권의 실행 방법으로 (i) 담보물의 매각, (ii) 담보권자가 담보권설정자의 의무의 이행을 대신하여 실질적인 담보의 수령, (iii) 채무를 청구할 권리를 담보하는 경우, 담보권자가 제3자로부터 금전 또는 다른 재산의 수령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는 경우 다른 방법에 의한 실행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은행 대출의 경우에는 담보물을 사적으로 매각하여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는 내

용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 통지에 따라 담보목적물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자는 담보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데, 통지서에 기재된 기한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담보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을 강제로 점유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보유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이나 인민위원회 등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동담보권자가 있는 경우, 담보권자는 담보 실행 전에 다른 담보권자에게 담보권 실행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하거나, 담보권 등록에 따라 담보권 실행의 통지를 등록하여야 하며, 담보권 실행 통지 후 언제 담보권을 실행할 것인지는 당사자들간에 합의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아무런 합의가 없는 경우 실행은 실행 통지일로부터 부동산의 경우에는 15일, 동산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실행할 수 없다.

담보권 실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법원에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이 담보권의 실행 절차에 개입할 수도 있다.

즉, 담보권 실행 자체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분쟁의 해결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 경우 담보권의 실행은 법원의 판결에 따르게 되며 이는 일반적인 법원의 판결과 같이 Civil Judgment Enforcement Agency(집행관)에 의하여 집행이 이루어진다.

5. 변제 순위

담보물의 매각 대금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서 변제된다.

- (1) 변제 순위는 담보 거래가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 (2) 하나의 담보 목적물이 여러 채무를 담보하는 경우에 등록된 담보거래와 등록되지 않은 담보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된 담보권의 채권이 먼저 변제되어야 한다.
- (3) 하나의 담보 목적물에 여러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모든 담보권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 순위는 담보권 설정 순서에 따른다.

제5장 _ 조세

외국인투자사업과 베트남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세로는 법인세, 외국인계약세,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특별소비세, 수출입관세, 천연자원세 등이 있다.

1. 법인세

가. 법인세 일반

(1) 납세의무자

법인세는 내국법인, 외국법인(고정사업장유무), 협동조합법(Law On Co-Operatives)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전문가조직, 기타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조직의 과세소득에 부과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전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되고 있었으나, 이 내용을 개인소득세법으로 이관하였다.

(2) 고정사업장

외국법인의 경우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베트남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하고,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고정사업장을 통한 국외원천소득과 고정사업장과 관련 없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한다. 한편, 법인세법상의 고정사업장은 다음과 같다.

- (가) 지점, 영업사무소, 공장, 작업장, 교통수단, 광산, 원유 및 가스 채굴장소, 기타 천연자원의 채굴, 채취 사업장
- (나) 건설장소; 건설, 시공 및 조립장
- (다) 상담 등 용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소
- (라) 외국법인의 대리점
- (마)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계약서 작성 및 서명의 권한을 가진 대표사무소 혹은 계약서 작성 및 서명의 권한 없이 재화를 배달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대표사무소

(3) 과세표준

과세표준 = 과세소득 - (비과세소득 + 이월결손금 (5년))

과세소득 = 총수입 - 공제가능비용 + 기타소득

과세소득은 국내외의 제조, 판매,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총수입-공제가능비용)과 지분, 주식 및 부동산 양도차익 등의 기타소득을 포함한다.

(가) 공제가능비용

비용은 i) 실제로 발생한 금원 중, 사업과 관련되고, ii) 적격한 증빙(예를 들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입증될 경우에 공제 가능하다.

(나) 공제불가능비용

공제가 불가능한 비용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공제가능비용의 2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용, 단 천재지변, 전염병, 혹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손실은 제외
- 2)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 제조, 재화의 판매, 용역과 관련되어 사용되지 않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 회사의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 증빙을 구비하지 않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 현행 원가회계기준에 따라 회사의 회계장부에서 관리되지 않는 감가상각비
 - 기타 규정에 따른 비용공제불가감가상각비
- 3) 신고된 수율을 초과하는 원재료, 부재료, 연료, 가스 기타 재료비
- 4) 적격 증빙을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본 시행규칙 별첨양식 01-TNDN에 의한 신고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산지 직접구매 1차 산업 생산물의 원가
- 5) 인건비 중
 - 실제 지출되지 않았거나, 법에서 정한 적격 증빙 없이 지출된 급여, 임금 및 수당
 - 근로계약서 혹은 단체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상여
 - 종업원에게 지급 예정인 급여, 임금 및 상여를 회사의 법인세 신고 시까지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자금(contingency fund)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의 미지급 급여, 임금 및 상여
 - 개인회사 소유주에게 지급된 급여 및 임금, 창립멤버에게 지급된 보수,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법인의 이사회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 6) 혁신이나 개선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포상금 중 규정이 없고, 포상위원회를 통해 지급되지 않는 금액
- 7) 종업원에 대한 생명 보험료 지급액
- 8) 노동규약에 따르지 않은 출장비, 규정에 따른 국영기업 직원 일비의 2배를 초과하는 출장비(Per diem)
- 9) 부적절한 인원, 목적, 수준으로 지급되는 여성 종업원 관련 비용

- 10) 법정 수준을 넘어서는, 사회 및 의료 보험 및 노동조합에 지원된 금액
- 11) 임대건물에서 임차인이 지급한 전기·수도요금 중 별첨양식 02-TNDN의해 신고되지 아니한 금액
- 12) 선급비용 중 기간 미도래분
- 13)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영업을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중 베트남중앙은행에서 공표한 기준이자율의 1.5배를 초과한 이자
- 14) 미납된 자본금에 상응하는 차입금 이자

[사 례] 투자허가서상 정해진 정관 자본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입금이 발생될 경우, 그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는 정관 자본금 납입 부족분에 해당하는 이자금액 만큼 안분 계산하여 법인세법상 손금 불산입 한다(정관 자본금 납입 부족액은 정관에 정해진 정관 자본금 납입 스케줄이 경과한 날부터 계산함)

- 15) 규정을 초과하여 적립하는 충당금 및 준비금(재고자산평가충당금, 대손충당금, 판매보증충당금, 사업손실준비금, 퇴직급여충당금)
- 16) 총 공제가능비용의 10%를 초과하는 제품의 제조, 판매 및 용역제공과 직접 관련된 광고선전비, 마케팅비, 판매촉진비, 판매수수료, 접대비, 경조사비, 회의비, 원가보조비, 할인료, 등(단, 설립일로부터 3년 동안은 15%를 적용) 총 공제가능비용에는 이 호에서 규정하는 비용은 제외하며, 유통회사의 경우 상품매출원가는 포함하지 않음.
- 17) 외화환산손실
- 18) 교육, 보건, 천재지변 혹은 법에서 정한 빈민층거주지원 등을 제외한 기부금
- 19) 외국법인이 국내 자회사에게 부과한 경영관리비 중 규정(외국법인의 총경영관리비용×(베트남자회사매출액/해외자회사매출액))을 초과하여 배분된 금액
- 20) 과태료, 벌과금
- 21) 매입세액으로 공제된 매입부가가치세, 법인세, 개인소득세

(다) 이월결손금

과세 년도에 사업 운영 중 회사에게 발생한 결손은 다음 해로 이월될 수 있다. 단, 결손금은 5년을 초과하여 공제될 수 없다. 결손금소급공제(carrying-back of losses)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한 손실의 경우 같은 부동산 양도로부터 발생한 이익에서만 상계될 수 있다.

(라) 과학기술개발준비금

매년 과세소득의 10%까지를 과학기술개발준비금으로 설정하고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설정 후 5년 이내에 설정준비금을 70% 미만을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준비금을 환입하여 계산된 법인세에 이자(미사용분은 국공채 1년 만기 이자율(기간 2년 제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일변 5/10,000)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4) 법인세율

과세 표준에 부과되는 일반법인세율은 25% 이다. 원유와 가스 및 다른 희귀광물의 탐사, 시추 및 개발활동을 수행하는 회사에 적용되는 세율은 32%~50%이다. 이전에는 토지사용권 또는 토지임차권 양도 시 법인세 이외에 10%~25%의 누진세율로 추가적으로 법인세가 부과되었으나, 2009년부터는 이러한 누진세율은 폐지되었다.

(5) 세무행정

법인세 신고는 매년 이루어지는데, 분기별로 중간예납이 필요하다. 즉 회사는 예상법인세 신고 금액 또는 과세당국에 의한 계산된 예상법인세 금액을 근거로 분기별로 법인세를 익월 30일 내에 신고 · 납부를 하여야 한다.

한편, 회계연도 종료일 후 90일까지 최종세무신고서 및 감사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면서 납부 세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과세기간은 역년(曆年)이다. 하지만, 재무부로부터 승인을 얻는다면 다른 세무회계연도를 이용할 수 있다. 회사들은 베트남동(VND)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6) 투자인센티브

(가) 우대세율

과세특례의 일부로서 (1) 투자장려분야 또는 (2) 사회-경제적 낙후지역에 투자하는 회사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매출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10% 또는 20%의 우대세율을 정해진 기간 동안 적용 받는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 - 10년	10% - 15년
시행령 124 별표상의 사회-경제적 낙후지역	① 시행령 124 별표상의 극단적인 사회-경제적 낙후지역 ② 시행령 124 별표상의 경제구역 및 고도기술지역 ③ 기술집약,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총리가 지정한 사회간접자본(항만, 철도 등)/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최장 30년까지 연장가능)
20%- 영업기간	10%- 영업기간
농협조합과 인민신용기금(People's Credit Funds)	총리가 정하는 교육훈련, 직업교육, 건강보전, 문화, 체육, 환경산업분야(이하 "사회화분야")

(나) 법인세 면제 및 감면

위에서 언급한 우대세율 이외에도, 신규설립을 하는 회사는 최초로 이익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다음의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

2년면제 + 4년 50%감면	4년면제 + 5년 50%감면	4년면제 + 9년 50%감면
		① 시행령124 별표상의 경제단지 및 고도기술산업단지 ② 기술집약,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총리가 지정한 사회간접자본(항만, 철도 등)/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시행령 124 별표상의 사회-경제적 낙후지역	시행령 124 별표상의 사회-경제적 낙후지역 혹은 극단적인 사회-경제적 낙후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사회화영역사업영위	① 시행령 124 별표상의 극단적인 사회-경제적 낙후지역 ② 시행령 124 별표상의 사회-경제적 낙후지역 혹은 극단적인 사회-경제적 낙후지역에서 사회화영역사업영위

※ 최초 매출발생연도부터 3년간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4년째부터 면제기간 및 이후의 감면기간을 강제로 적용하게 된다.

나. 지분 양도에 대한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on capital assignment)

(1) 과세 표준

지분 양도에 대한 법인세는 회사의 주식, 채권, 수익증권, 혹은 법정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외국 인투자가가 획득하는 이익에 대하여 부과된다.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금액과 양도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2) 세율

지분양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도 과세표준의 25%이다.

(3) 신고

주식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은 기타수익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인 법인세와 동일하게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한편, 양도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베트남회사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베트남의 양수법인이 그 외국법인을 대신해 법인세를 원천 징수할 의무가 있다. 주식양도가 관계기관의 승인을 요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0일, 그 외에는 양도계약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지분 양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는 양도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곳이다.

다. 부동산 양도에 대한 법인세

부동산양도에 대한 법인세는 그 토지에 부착된 건물과 관계없이 토지 사용권, 토지 임차권, 토지 전차권의 양도(이하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법인세로서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취득원가-필요경비)×25%로 계산된다.

(1) 양도시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양도인이 사실상 양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이며, 양수인이 재산 혹은 토지 사용권을 등록하거나 토지 사용권의 양도가 관련 기관에서 확인이 되는 날과는 관련이 없다.

(2)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양도가액으로 하되, 토지 사용권의 경우 실제양도가액이 양도시기에 지역인민위원회가 공표한 가격보다 적은 경우에는 지역인민위원회가 공표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하게 된다.

(3)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

취득원가는 정부로부터 토지사용권을 허여 받으면서 정부에 지불하였던 금액이고, 필요경비는 토지 사용권 취득과 관련하여 법에 따라 납부하였던 공과금, 토지개량 및 평지화 작업과 관련되어 발생하였던 비용 등이 포함된다. 회사가 양수인으로부터 양도가액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응하는 취득원가 혹은 필요경비를 결정짓지 못했을 경우, 우선적으로 양도가액의 2%로 예정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가액은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4) 신고

부동산 양도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회사는 부동산양도가 이루어 질 때마다 정해진 서식에 따라 해당 내용을 부동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회사가 신고한 금액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는 3 영업일 이내에 신고금액을 결정함), 과세기간이 종료하면 최종적으로 부동산 양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부동산 양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는 상기와 같이 하거나, 일반 법인세 규정에 따라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

라. 특수관계자 거래

(1)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이전가격세제는 일반적으로 OECD Guideline과 정상가격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가) 특수관계자 범위

베트남의 이전가격규정은 20% 지분을 요건을 적용하므로,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다른 나라에 비해 폭넓게 적용된다. 또한 거래의 50%를 초과하여 매출, 매입 혹은 대출 및 보증거래를 하고 있다면 그 거래의 상대방은 특수관계자에 포함된다.

(나) 정상가격산출방법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comparison of prices in independent transactions), 재판매가격방법(reselling price), 원가가산방법(prime cost plus profits), 거래순이익률방법(profit comparison), 이익분할방법(profit division)이 있으며, 적용에 있어 순위는 없다.

(다) 특수관계자거래 신고

특수관계자거래는 매년 연말 세무신고 시 신고되어야 한다.

(라) 이전가격자료 동시준비의무(contemporaneous documentation)

회사는 가격 또는 이윤에 대해 정상가격을 근거로 평가하면서 채택된 가격정책이 정상가격조건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회사는 이전가격과 관련된 특수관계, 거래의 기술 및 도해와 관련된 정보, 제품의 기술적인 사양, 계약조건과 가격결정방법 등 기본자료(회사 및 특수관계자 정보/특수관계자 거래정보)와 정상가격산출방법 및 정상가격의 근거자료(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정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과세당국에서 요청 시 이러한 문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한번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마) 유의사항

베트남이전가격세제는 미국 및 OECD 등 선진국의 규정을 벤치마킹하여 그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다. 그러나 다음의 세가지 특징은 이러한 선진국 규정과는 배치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 1) 특수관계자거래가격 및 이윤이 정상거래가격의 1%, 정상거래이윤의 0.5% 이상의 차이가 있으면, 과세당국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 가능하다.
- 2) 회사가 필수적인 이전가격규정을 따르지 않았을 때, 과세당국은 과세당국의 비공개자료

를 근거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 가능하다.

3) 정상가격범위의 경우 비교대상업체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조정한다.

(바) 기타

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Advance Pricing Agreement)의 규정은 아직 없다.

(2)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현행 투자법(Law on Investment)상에 자본/차입금 비율에 대한 제한은 없다. 사업의 타당성 분석(feasibility study)과 사업계획(Business Plan)을 준비하면서, 투자자는 사업의 필수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적절한 자본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허가와 관련된 당국은 그런 비율을 검토하고 조언을 할 수 있지만, 그 비율이 비현실적이지만 않다면 수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

(3) 피지배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mpanies)

베트남은 CFC rule이 존재하지 않는다.

(4) 연결납세제도

베트남에서 연결납세신고는 허가되지 않는다. 한 그룹의 각각의 회사는 개별적으로 세무신고를 하여야 한다.

마. 외국인 계약세[Foreign Contract Tax(이하 “FCT”)]

(1) 납부 방법의 선택

외국인계약세는 베트남법인 혹은 베트남인과 계약 등에 근거하여 사업을 하거나 베트남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외국법인(고정사업장유무에 상관없음), 외국인(거주자여부에 상관없음)(이하 “외국인계약자”)과 외국인계약자와의 계약 등에 근거하여 사업을 하거나 베트남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외국법인,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베트남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광고/마케팅용역, 투자 및 판매촉진용역 등 일부 규정된 용역을 제외하고는 해외에서 수행되더라도 FCT 부과 대상이다. 외국인 계약자는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가) 조세를 직접 납부하기 위하여 베트남 회계 제도(Vietnamese Accounting System, 이하 “VAS”)를 등록한다 (이하 “VAS 방법”)

(나) 해당 사용자가 원천징수 함으로써 조세를 납부한다 (이하 “원천징수 방법”)

(다) 부가세는 공제방식에 의해 신고·납부하고, 법인세는 인정기준에 의해 정해진 세율로 납부한다 (이하 “Hybrid 방법”)

(2) VAS 방법

(i) 외국인계약자가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베트남 거주자이고, (ii) 계약수행기간이 연 183일 이상이고, (iii) 외국인계약자가 Vietnamese Accounting Standards를 도입하고 있다면, 외국인계약자는 “부가세 공제 방법”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하고, 회계 장부상의 실제 순이익의 25%로 산정된 법인세를 납부한다. 외국인 계약자와 계약을 하는 베트남 당사자는 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그 외국인 계약자가 VAS 방법에 의해 법인세 및 부가세를 납부할 것이라는 사실을 서면 통지할 의무가 있다. 조세 측면만 보면, VAS가 적용된 외국인 계약자와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간 차이는 없다. VAS 방법에 의하면, 외국인 계약자는 해당 지역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코드(tax code)를 취득하여야 한다. 외국인 계약자에 의한 VAS 이행은 회계시스템과 전표의 등록 및 유지로 인해 서류작업 및 행정적 절차의 부담이 크다. 또한 현지 세무서는 당해 외국인계약자의 사업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담으로 인하여 베트남에 주재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은 VAS 방법을 선호하지는 않는다.

(3) 원천징수방법

외국인 계약자가 VAS 방법 적용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계약의 베트남 당사자 (외국인투자법인 포함)는 외국인 계약자를 대신하여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외국인 계약자와 계약을 하는 베트남 당사자는 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등록한 후 그 외국인 계약자를 대신하여 원천징수방법에 법인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원천징수 방법에 의하면, 외국인 계약자는 세무서에 VAS를 등록하거나 FCT를 직접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계약의 베트남 당사자는 외국인 계약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부가세와 법인세를 포함한 FCT를 원천징수세로서 외국인 계약자 대신에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천징수 방법의 적용에 있어, 부가세와 법인세 산정에 사용되는 부가가치(value added)는 다음과 같이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인정” 기준 (on a deemed basis)에 의해 결정된다:

공급 형태	부가세율	법인세율	합계
무역 (유통 및 재화 등의 공급)	면제	1	1
서비스, 기계 및 장비 리스 사업, 보험업	5	5	10
원료나 장비, 기계를 제공하지 않고 시행되는 건설, 조립, 설치업	5	2	7
원료나 장비, 기계를 제공하면서 시행되는 건설, 조립, 설치업	3	2	5
기타 사업 또는 제조 활동 및 수송	3	2	5
비행기, 비행기엔진, 비행기부품, 선박의 리스	면제	2	2
재보험	면제	2	2
증권, 채권 및 저축성예금증서의 양도	면제	0.1	0.1
차입금 이자	면제	10	10
사용료	면제	10	10

원천징수 방법은 절차의 간소함으로 인해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많은 외국인 계약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공급형태에 따라 부가세율 및 법인세율의 차이가 있으므로, 공급형태별 거래금액을 고려하여 계약내용을 세분화하거나 통합함으로써 조세절감이 가능하다.

[사 례] 일반 판매 계약에 따라 수입된 장비와 기계는 FCT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완성 인도 계약에 의한 장비 공급은 FCT의 대상이다. 따라서, 장비공급금액이 크다면 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완성 인도 방식 계약을 (가) 장비 공급 계약과 (나) 건설 계약 등의 2개 계약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가) 원천징수방법의 구체적 계산 사례

계약금액이 FCT를 공제한 금액일 때, 외국인 계약자 또는 외국인 하도급업자가 이행하는 계약부분에 대한 가액은 각각 다음 공식을 적용하여 법인세와 부가세 과세표준액(이하 “과표액”) 산정을 위해 gross-up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 과표액 = FCT를 공제한 가액 ÷ (1 - 공급형태별 인정 법인세율)

부가세 과표액 = 법인세 과세액 ÷ (1 - 공급형태별 인정 부가세율)

[사 례] 계약자 A는 시멘트 공장 Z를 건설을 감독하는 용역을 베트남 파트너에게 제공하였다. 계약금액은 세금을 제외하고 USD 300,000이다. 추가적으로 베트남 파트너는 외국인 계약자의 관리자들을 위하여 USD 23,000 금액상당의 숙박과 근무장소를 제공하였다. 계약 하에서 베트남 당사자는 외국인 계약자를 대신하여 법인세와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의 법인세 및 부가세 납부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a) 과세총수입금액 계산

법인세과세총수입금액 = $(300,000 + 23,000) \div (1-5\%) = \text{USD } 340,000.00$

부가세과세총수입금액 = $(300,000 + 23,000) \div (1-50\% \times 10\%) = \text{USD } 340,000.00$

(b) 납부세액의 계산

법인세납부금액 = $340,000.00 \times 5\% = \text{USD } 17,000.00(1)$

부가세납부금액 = $340,000.00 \times 50\% \times 10\% = \text{USD } 17,000.00(2)$

총납부세액 = (1) + (2) = USD 34,000.00

(4) Hybrid 방법

최근 발표된 Circular 197/2009/TT-BTC (2009년 10월 9일자)에 따라 기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던 Circular 134 에서 폐지하였던 Hybrid 방법이 다시 부활되었다.

Hybrid 방법이란 부가세는 공제방식(Conventional Method)에 의하여 신고, 납부 하고 법인세는 인정기준에 의하여 정해진 세율로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Hybrid 방법을 채택하면 부가세는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하고, 법인세는 인정기준 소득방식으로 비교적 낮은 세율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건설, 시공프로젝트의 경우 Hybrid 방법을 선호한다. 외국인 계약자가 Hybrid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i)베트남 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하고 (ii)계약수행기간이 183일 이상이어야 하며, (iii) Circular 244에 따른 현금주의회계처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외국인 계약자와 계약하는 베트남 당사자 혹은 외국인 하도급업자와 계약하는 외국인계약자는 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외국인 계약자 혹은 외국인 하도급업자가 Hybrid 방법에 의해 법인세 및 부가세를 납부할 것이라는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인계약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종료신고와 동시에 과세당국으로부터 청산감사를 받게 된다.

바. 이중과세방지협정(이하 “조세조약”)

현재 베트남은 58개국의 국가와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협정, 즉 조세조약을 체결하였다. 모든 조세조약은 조세조약과 현지 조세법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 조세조약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무상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조세조약에 따른 조세 면제는 자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면제 신청서가 기타 관련 문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어로 된 모든 문서는 베트남어로 번역되어 베트남 공증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허가를 얻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1) 한국-베트남간 조세조약

(가) 제한세율 요약

한국과 베트남간 조세조약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발효일자는 1994년 9월 9일, ② 대상 조세는 한국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베트남의 경우 개인소득세, 이윤세 및 이윤송금세, ③ 제한세율(원천징수)은 이자소득 10%, 배당소득 10%, 사용료 소득 중 특허권 등 산업적 투자의 경우 5%, 기타의 경우는 15%이다.

(나) 주요 사항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한국과 베트남간 조세조약 역시 다른 조세조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그 기업의 베트남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베트남에

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베트남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데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및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간의 각서 교환에 의해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되는 금융기관이 베트남에서 가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베트남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과 관련하여서는, 베트남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베트남에서 과세되지만 베트남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것으로 인한 소득은 베트남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 경우에는 동 양도소득에 대하여 베트남에서 과세된다. 현행 베트남 세법 상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정의가 없으므로, 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해 이론상 과세 여부에는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베트남 과세 실무 상 부동산이 50% 이상인 법인의 지분 양도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소득과 관련하여서는, 한국 거주자가 베트남에서 수행하는 근로에 대하여 취득하는 급여,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베트남에서 과세할 수 있다. 다만, (i) 수취인이 어느 12월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에서 체재하고, (ii)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iii)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

가.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부가세는 베트남에서 생산되거나, 사업 또는 소비에 사용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적용된다. 부가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대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행위를 하고 있는 모든 기관 및 개인(이하 “사업자”)과 과세대상 재화를 수입하는 기관 및 개인(이하 “수입자”)이다.

나. 면세재화용역

미가공 농산물, 의료서비스, 교육 및 직업훈련, 기술이전, 자본거래(지분양도 등) 및 파생금융상품거래 등 총 25개 그룹의 부가세법 제5조에 열거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특히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신기술관련 재화를 수입하는 다음의 경우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고정자산을 구성하는 일반적인 생산설비 수입 시 관세는 면제되나 더 이상 부가세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1) 과학 연구 및 기술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할 필요가 있는 기계, 장비 또는 특수자재

- (2) 가스나 유전의 탐광, 탐사 및 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할 필요가 있는 기계, 장비, 대체품, 특수운송수단 및 자재
- (3) 생산 또는 사업에 사용되는 외국으로부터 임대된 항공기(항공기엔진포함), 원유시추플랫폼 및 선박

부가세의 면제는 매입세액을 공제(또는 환급)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영세율과 구분된다.

다. 과세표준 및 세율

(1) 과세표준

부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은 (i)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판매가격으로 하고(특별소비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함), (ii)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수입가격에 수입관세를 합산한다(특별소비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함). 특히, 부동산개발사업, 건설업, 부동산임대 등의 경우 계약에 따라 대금을 분할하여 받을 경우 그 공급시기는 대금을 각각 수령하는 시기이다. 이전에는 대금의 회수시기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았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납세의무자가 대가를 외국환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거래시점을 기준으로 베트남 중앙은행(State Bank of Vietnam)에서 공시하는 환율에 따라 베트남동(VND)으로 바꾸어야 한다.

(2) 세율

세율	내역
10%	표준세율로 아래의 세율 및 부가세 면제대상품목을 제외한 모든 재화 및 용역
5%	농업, 의료장비, 교육 및 과학분야에서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 생활필수품과 관련된 재화 및 용역 등
0%	수출품, 국제운송용역
면제	생산자 판매의 비가공 농산물, 금융·보험업, 수입장비 등

면세거래로 규정되던 국제운송업이 영세율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러한 종류의 사업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라. 부가세액의 산정방법

부가세액은 세액공제법 또는 직접공제법에 의하여 산정된다.

(1) 세액공제법(tax credit method)

납부할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매출세액이란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고, 매입세액이란 재화 및 용역을 매입함으로써 수령

한 세금계산서(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전표)상에 기재된 세액을 뜻한다. 매입세액공제액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 그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매입부가세의 공제가 가능하다(참고로 기존 부가세법은 수정신고 기한이 3개월이었다). 2천만 베트남 동 이상의 매입에 대한 대가 지급 시 반드시 은행을 통해 송금되어야 매입부가세의 공제가 가능하다.

(2) 직접공제법(method of calculation of VAT directly on the basis of added value)

납부할 부가세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란 특정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할 때에 수령한 대가에서 당해 재화 및 용역을 매입할 때에 지급한 대가를 차감한 것이다. 직접공제법은 (i) 세액공제법 적용의 기초가 되는 회계,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관리할 수 없는 거주자, (ii)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사업을 하지 않는 외국법인과 외국인 및 세액공제법 적용의 기초가 되는 회계,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관리할 수 없는 기타 사업체, (iii) 금 · 은 · 보석 혹은 외국환을 매매하는 사업자와 같이 제한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마. 사업자등록

베트남에서 과세대상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는 과세당국에 부가세법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등록증(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s)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바. 신고 및 납부절차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매월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 시에는 시행규칙이 정한 표준양식에 따라 재화와 용역의 판매 및 구매에 관한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같다. 사업자와 재화의 수입자는 재화의 수입 시에 국경관문에서 수입관세를 신고함과 동시에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를 바탕으로 고지서를 발행하며, 납세자는 20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자와 재화의 수입자는 수입 시마다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세 고지 및 납부기한은 수입관세에 대한 고지 및 납부기한을 따른다.

또한 매년 말에 부가세의 확정 및 정산을 하게 되는데, 사업자는 익년 90일 이내에 과세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과소 납부한 세액을 추가 납부 혹은 과다 납부한 세액은 다음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사. 환급

매입부가세가 매출부가세를 초과하게 되면,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의 경우 매입부가세가 2억 베트남 동을 초과하게 되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3. 개인소득세(이하 “소득세”)

가.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되며,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로 간주한다.

- (1) 거주자는 1년 또는 입국일로부터 12개월 기간에 183일 이상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
- (2)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일정기간 거소(90일 이상의 주거를 위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를 둔 개인

나. 과세소득

(1) 사업소득

(2) 근로소득

- 급여 및 임금, 기타 급여 성격의 수입
- 수당 및 지원금 등, 단 다음을 제외한다: 특별공로수당, 국방 및 안보수당, 위험수당, 고역 및 원거리파견수당, 산업재해, 직업병, 출생 및 육아 관련 수당, 업무와 관련된 질병보상금, 퇴직급여, 노동법에 따른 실업급여, 기타 사회보장보험에서 수령하는 지원금, 범죄예방지원금 등
- 보상금 등
- 각종 사업협회, 경영위원회, 검열위원회, 관리위원회 등 기타 조직에 참여하여 수령하는 금액
- 금전여부와 상관없이 납세의무자가 수령하는 모든 형태의 복리후생(주택임차료, 종업원을 위한 각종 회원권 fee, 종업원의 건강유지, 오락 및 스포츠활동 지원 등)
 - 주택지원금은 실제 임차료와 과세소득대상소득(임차료를 제외한)의 15% 중 작은 금액에 대해 과세 (2008년 구 소득세법 규정과 동일)
 -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비 지원금은 비과세
 - 베트남 전근수당(1회), 귀국수당(1년에 1회)은 비과세
 - 단체 출퇴근 교통비는 비과세
 - 근로자의 근로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료지급은 비과세
 - 개인을 명의로 한 기명식 회원권(골프, 테니스, 헬스클럽 등) 비용은 과세
- 보너스, 단 다음을 제외한다: 국가로부터 수령하는 상금, 국내·외에서 인정하는 상과 부상금액, 정부가 인정하는 기술개발, 발명, 실용신안 등으로 발생하는 상금, 범죄고발에 관한 상금

(3) 자본소득: 이자 및 배당 등

(4) 자본양도소득: 법인 지분 및 주식의 양도

- (5) 부동산양도소득
- (6) 토지사용권 및 건물양도소득
- (7) 주택의 소유권 및 사용권 양도소득
- (8) 토지임차권 혹은 매립수면(a water surface)의 양도소득
- (9) 기타 부동산 권리의 양도로 받은 모든 물품
- (10) 기타소득 : 복권 당첨금, 도박, 카지노 상금, 체육경기 등의 부상
- (11) 사용료소득 : 지적재산권의 양도, 사용권리의 제공으로 인한 소득, 기술이전소득
- (12) 프랜차이즈소득
- (13) 상속 및 증여소득

다. 비과세소득

- (1) 부부간, 양부모를 포함한 부모와 자식간, 장인과 사위, 조부모와 손자 손녀, 형제자매간에 부동산 양도소득
- (2)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1개 주택을 소유한 개인이 양도하는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의 양도소득(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부부가 공동 명의의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가 있고,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 소유하는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 (3) 국가가 개인에게 할당한 토지사용권의 가액
- (4) 부부간, 양부모를 포함한 부모와 자식간, 장인과 사위, 조부모와 손자 손녀, 형제자매간에 상속 혹은 증여소득
- (5) 국가가 농업에 종사하는 가계 혹은 개인에게 할당한 농경지의 전환으로 발생하는 소득
- (6) 농업, 임업, 염전, 축산업 및 농작물재배, 수산업 등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1차 가공된 식료품 생산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가계 혹은 개인의 수입
- (7)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이자 및 사회보장보험 등에서 나오는 이자
- (8) 국외 거주하는 내국인으로부터 송금되는 외환수입
- (9) 법에 의한 주간근무수당 혹은 일반정규급여를 초과하는 야간근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 (10) 사회보장보험연금, 장학금 등
- (11) 생명보험과 비생명보험의 보상금, 산재보상금, 법에 의한 국가 보상금 및 기타 보상금 수입액
- (12) 자선, 인도적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가 인정하는 자선기금 등에서 수령하는 보조금 등

라. 과세방식 및 과세기간

소득세 과세기간 및 시기는 다음과 같다.

구분	과세방식	소득구분	과세기간 및 시기
거주자	종합과세	사업소득과 급여소득	연간소득으로 과세
	분리과세	주식의 양도소득	발생시기별 혹은 연간소득으로 과세
		이외의 소득	발생시기별 과세
비거주자			발생시기별 과세

마. 소득공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해 본인 월 400만 동, 부양가족(수입이 없는 직계 존·비속 및 장애인 등)은 인당 월 160만 동의 인적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바. 세율

(1) 거주자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세율

구분	연간소득	월간소득	세율(%)
	million VND	million VND	
1	~ 60	~ 5	5
2	60 ~ 120	5 ~ 10	10
3	120 ~ 216	10 ~ 18	15
4	216 ~ 384	18 ~ 32	20
5	384 ~ 624	32 ~ 52	25
6	624 ~ 960	52 ~ 80	30
7	960 ~	80 ~	35

(2) 거주자의 기타소득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자본소득	개인이 수령하는 이자·배당금액	5
지분양도소득	양도가액 * - 취득가액 - 기타직접비용 * 양도가액이 계약서상 금액과 일치하지 않거나, 시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과세당국은 직접 조사하거나 다른 양도자의 가액 및 유사거래를 참조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할 수 있음	20
유가증권 양도소득 (주식, 채권 등)	(i) 단일세율에 따른 양도소득신고를 전년도말까지 신고하는 경우: 양도가액 * - 취득가액 - 기타직접발생비용 (ii) 위 (i)의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자 : 양도가액 (*) * 양도계약서에 양도가액이 없거나, 양도가액이 양도자가 양도시점에 장부에 계상하고 있었던 가액보다 작은 경우, 양도시점의 증권발행회사의 장부에 근거해서 양도가액을 결정함	20 0.1
부동산 양도소득	(i) 일반적인 경우 양도가액 (*) - 취득가액 - 기타 직접비용 (ii) 취득가액 및 기타 직접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 양도가액 * 양도가액을 파악할 수 없거나, 계약서 상 양도가액이 인민위원회에서 고시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토지사용권의 양도가액은 인민위원회의 고시가격으로 간주하고, 건물은 건설부의 규정에 따라 가치를 산정하거나, 인민위원회의 등록세 과세표준에 따라 산정함	25 2
로열티 또는 프랜차이즈소득	천만 베트남 동을 초과하는 해당 소득	5
기타소득	천만 베트남 동을 초과하는 해당 소득	10
상속 또는 증여	천만 베트남 동을 초과하는 해당 소득	10

(3) 비거주자의 소득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사업소득	비용의 차감은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매출액 전체 • 재화의 공급 • 용역의 제공 • 제조, 건설, 운송 및 기타	1 5 2
근로소득	근로소득 현금 또는 현물로 수령한 전체 급여 * 소득의 지급지에 관계없이 베트남에서 제공한 근로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베트남에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함	20
자본소득	총수령금액	5
지분양도소득	양도가액 (비용인정 없음) * 베트남회사의 지분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매매거래가 베트남 내 또는 해외에서 이루어지는지의 여부와 무관함.	0.1
부동산 양도소득	양도가액 (비용인정 없음)	2
기타	자본소득, 로열티소득, 프랜차이즈소득, 기타소득, 상속 또는 증여에서 발생한 과세소득 및 세율은 거주자와 동일함	

사. 신고 및 납부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는 매월 소득을 지급하면서, 다음달 20일까지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연도 종료일 후 90일 이내에 최종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기타 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는 다음과 같다.

구분	신고 및 납부의무
사업소득	① 회계장부를 구비한 사업자의 경우 분기별 신고를 하는데 분기의 다음달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함. 사업연도 종료일 후 90일 이내에 소득세에 대한 최종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함. ② 비용을 제외한 총수입만 회계 처리한 사업자는 상기와 같은 신고 및 납부의무를 진다. 단, 비용은 과세관청이 결정함. ③ 적절한 회계처리를 할 수 없는 사업자의 경우 과세관청이 정한 간주세금을 분기별로 신고 및 납부하게 되며, 최종 신고 및 납부의무는 없음.
근로소득	해외 혹은 국제기관 등으로부터 소득을 수령하는 자는 소득을 수령한 다음달 20일까지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최종신고는 연도말로부터 90일 이내에 수행하여야 함.
부동산양도소득	납세할 금액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및 사용권의 양도서류와 함께 부동산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음. 양도자가 신고한 금액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는 3 영업일 이내에 신고금액을 결정함.
증권양도소득	20% 세율 납부를 신고한 개인은 0.1% 세율로 계산된 세금이 더 클 경우에만 최종 신고 및 납부를 연도말로부터 90일 이내에 수행하여야 함

4. 특별소비세

가. 적용 범위

특별소비세 (이하 “특소세”)는 사치품 또는 소비가 장려되지 않는 일부 상품의 생산 또는 수입 및 서비스 제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품 및 서비스는 특소세 부과 대상이다.

- (1) 상품 : 담배, 양주, 맥주, 24인승 이하의 자동차, 가솔린, 최대 90,000 BTU의 에어컨, 카드 및 사원 등에서 사용되는 향전용품(votive paper)
- (2) 서비스 : 디스코텍, 마사지, 가라오케, 카지노, 잭팟(jackpot), 도박, 골프 사업 (골프회원권 및 골프입장권 판매 등), 사행성오락(이전, 경마와 경륜) 및 복권사업

위의 상품과 서비스에는 특소세 이외에 부가세 10%가 부과되며 또한 수입되는 경우 다양한 세율의 수입관세가 부과된다.

나. 특소세율

번호	상품 및 서비스	세율 (%)
I.	상품	
1	담배 및 시가	65
2	양주 / 와인	25 - 50
3	맥주	45 - 50
4	자동차	10 - 60
5	비행기, 요트, 특정 오토바이	20 - 30
6	가솔린 및 가솔린에 혼합된 기타 성분	10
7	90,000 BTU 이하의 용량을 가진 에어컨	10
8	카드	40
9	향전 용품	70
II.	서비스	
1	디스코텍, 마사지, 가라오케	30 - 40
2	카지노, 잭팟, 사행성 게임	30
3	골프 사업	20
4	복권 사업	15

5. 천연자원세

천연자원세는 석유, 광물, 석유, 삼림, 어류 및 생수 등 베트남의 천연자원 개발에 부과된다. 천연자원세는 실제 생산량 가액 및 세율에 따라 산정된다.

특정 광물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품목	세율 (%)
금속성 광물	5 - 25
비금속성 광물	3 - 30
원유	6 - 40
가스	1 - 30
천연삼림상품	1 - 35
천연해양상품	1 - 10
생수	2 - 10
제비집	10 - 20
기타 (제비집 제외)	1 - 20

제6장 _ 노무관리

1. 근로계약

가. 근로계약 유형

베트남 노동법은 다음의 세가지 유형의 근로계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1)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
- (2) 기간제 근로계약(12개월부터 36 개월)
- (3) “계절적” 근로계약(추수 계절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한 12개월 미만)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종전에 많은 회사들은 계약 만료 시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노동법 개정으로, 이 같은 관행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아래의 원칙이 적용된다.

- (4) 첫 번째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지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은 첫 번째 계약 만료일 후 30일 내에 서명되어야 한다. 당사자들이 해당 30일 기간 만료 후에도 새로운 근로계약에 서명하지 않고 근로자는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첫 번째 기간제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변경된다.
- (5) 두 번째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이후에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한 복수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된다.

나. 근로계약의 체결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이 아닌 한,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가 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은 베트남 법률과 (있는 경우) 단체협약을 준수해야 하며 업무, 근무시간, 휴식시간, 임금, 작업 장소, 계약 기간, 작업 안전 및 위생, 사회 및 의료 보험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계약은 사회복지부(Ministry of Labor, War Invalids and Social Affairs, MOLISA)가 발행한 표준 양식으로 체결되어야 하는데, 표준 양식에는 사용자가 추가적인 근로 조건을 기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다. 수습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습기간을 가질 수 있다. 수습 기간 중에 각 당사자는 사전 통지 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임금이나 월급은 정규 임금 또는 월급의 최소한 70%가 되어야 한다. 수습기간에는 아래와 같은 제한이 있다.

- (1) 대학 수준 자격을 요구하는 직업 - 60일 이하
- (2) 직업 학교 수준 자격을 요구하는 직업 - 30일 이하
- (3) 육체 노동 - 6일 이하

수습 기간 말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의 성과를 통지해야 한다. 사용자가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정식 근로계약에 따라 공식적으로 고용될 권리 및 정규 임금과 법정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라. 근로계약의 종료

근로계약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당사자 간의 합의, 계약상 작업의 완료, 징역형 선고, 작업 금지 판결, 근로자의 사망 또는 실종 선고에 의해 종료될 수 있다.

노동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계속해서 계약상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가 절도나 부정을 저지르거나,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공개 혹은 누설하거나 그 밖에 사용자의 사업과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등의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감원의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가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종료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의 종류에 따라서 통지 기간이 45일, 30일, 3일로 다르다. 징계 사유가 있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가 필요 없다.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것 이외에 사전 협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불공정 해고에 해당하여 복직시키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등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특히, 사용자는 근로계약 종료 통지 전에 기업의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하며, 이는 사전 통지가 필요 없는 징계 사유 있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기간제 근로계약 또는 계절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계약에 규정된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계약상으로 합의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또는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임신한 여성으로서 의사로부터 근로 중단을 권고 받은 경우 등의 개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전 통지 후에 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한편,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45일 전에 사전 통지를 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임금 및 근로시간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에 베트남 근로자에게는 베트남 통화인 동(VND)으로 임금을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외국인을 위한 급여는 외국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상여금은 사용자가 매년 회사의 생산 및 영업실적, 근로자의 성과에 근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사용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다.

정규 근로 시간은 일일 8시간으로 제한되며, 가까운 미래에는 주 당 근로시간이 40시간(현재 주 당 48시간)이 될 전망이다. 근무시간은 상호 합의에 의해서 연장될 수 있지만, 일일 초과근무시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4시간을 넘을 수 없고, 연간 초과근무시간은 3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작업의 성질에 따라, 근로자는 연간 12일, 14일 또는 16일의 휴가를 갖는다. 여성 근로자는 경우에 따라서 최소 4개월 또는 6개월의 산후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급여의 100%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여성 노동자에 대한 처우

- 12개월 미만의 육아 휴가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근로 계약 종료 금지
- 출산 전후 업무난이도, 업무성격 등에 따라 4개월에서 6개월간 휴가
- 출산수당은 사회보험에서 지급
- 태아검진, 피임조치, 임신중절 등을 위한 휴가의 경우에 사회보험급여 지급

급여는 (해당 경우) 단체협약을 준수해야 하고, 법정 최저 임금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현재 외국인 투자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 임금에는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월 1,340,000동, 1,190,000동, 1,040,000동, 1,000,000동으로 구분되는데, 월 1,340,000동의 최저 임금은 하노이 및 호치민시 도심 지역, 월 1,190,000동의 최저 임금은 하노이 외곽 도시 지역, 호치민시 외곽 도시 지역, 하이퐁시, 다낭시, 동나이 일부 지역, 빈중 일부 지역, 붕파우시 등지의 외국인 투자회사에 적용된다.

한편,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무기간(년) X 기준 급여 X 0.5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기준 급여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 직전 6개월의 평균 급여가 되는데, 급여는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수당까지 포함한 급여를 말한다. 2009년 1월 1일부터 실업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실업보험가입 대상 근로자(근로계약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베트남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사업장)는 퇴직금 대신 실업보험금을 받게 된다. 12개월 이상 실업보험급여를 납부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실직 직전의 6개월 평균급여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업보험 급여 납입 기간에 따라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2008년 12월 31일 이전의 근로에 대해서는 퇴직시 해당 근로 기간에 대하여 기존 퇴직금 제도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의 중간 정산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계약의 종료시에 지급하는 것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 수 없음. 실무상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서면 합의하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경우가 있으나, 향후 분쟁(합의가 강압에 의했는지 등등)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확률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근로계약을 여러 번 다시 체결하면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의 퇴직금

예를 들어 1년 근로계약 1회, 2년 근로계약 1회, 기한을 정하지 않은 근로 계약 1회를 근거로 5년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각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최종적으로 퇴직하는 시점의 직전 6개월 평균 급여가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됨.

3. 사회보험 및 건강 보험

노동법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들은 사회보험에 가입할 자격을 갖는다. 사회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과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구분된다. 의무가입은 3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 또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게 적용된다. 3개월 미만의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회보험료가 급여에 포함되어야 하고, 근로자들은 자발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사회보험처럼, 베트남에서의 건강 보험도 의무 가입 보험과 자발적 가입 보험으로 구분된다. 의무가입 보험은 3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새로운 근로계약에 계속 서명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3개월 이상 또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자발적 건강보험은 참가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사회보험과 건강보험은 최근에 통합되어 사회보험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사회 보험은 질병, 임신, 퇴직, 사망, 산업재해 등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최소한 베트남 근로자에 대해서는 베트남 사회보험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2010년부터는 사용자는 총 급여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회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은 매월 총 급여의 6%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회보험료는 2010년부터 2년 단위로 2012년, 2014년, 2016년에 1%씩 인상될 예정이다. 그리고, 건강 보험에 관련해서,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이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총 급여의 2%이고,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총 급여의 1%이다. 근로계약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베트남 근로자가 10인 이상 사업장은 실업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월급여액의 1%를 종업원, 사용자 및 국가가 각각 부담한다.

4. 노동허가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관리직 또는 전문가이어야 한다. 또한 국가 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며, 현재 베트남과 외국 법률에 따라 기소되거나 실형을 선고 받은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그리고,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베트남의 해당 당국으로부터 노동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노동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로는 3개월 미만 베트남에서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 2명 이상의 구성원을 가진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즉, 소유주)인 외국인, 1인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인 외국인, 주식회사의 이사(Board of Members)인 외국인, 법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외국 변호사, 베트남 전문가들이 해결할 수 없는 긴급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등이 있다.

외국인 고용 비율인 3% 제한이 최근 없어짐에 따라, 외국인이 노동 허가를 획득하고 연장하는 요건이 더욱 엄격해졌다. 자신의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허가의 연장을 원하는 회사/단체는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다는 점과 외국인을 대체하기 위한 베트남 근로자를 교육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5. 근로규칙

10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은 근로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은 기업의 근로자에게 근로규칙을 공지하여야 한다. 근로규칙은 근무 및 휴식 시간, 회사 내의 위계 질서, 산업 안전 및 위생, 위반 행위와 징계 조치와 같은 의무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근로규칙은 근로자들이 따라야 하며, 근로자들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 사용자가 징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사업 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회사는 근로규칙을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국(DOLISA)에 등록해야 한다(등록일로부터 유효). 등록된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훨씬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6. 집단적 노사관계

가. 노동조합

노동법에 의하면, 모든 근로자들이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새로 설립되는 사업체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자 및 근로자 전체를 대표하고 이들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야 하는데, 지역 노동조합과 산업별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설립의 책임이 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설립에 조력하여야 하며,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는 노동조합을 인정할 의무가 있다.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거나 노동조합원을 차별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며 형사처벌까

지도 받을 수 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표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국가에 대한 연락 창구로서 행동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연락 창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에 관해 근로자들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자 대표에게 근로자들과 만날 것을 요구할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기구에도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노동조합이 정해진 기간(6개월) 이내에 설립되지 않는 경우, 상급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대표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임시 집행위원회(노동조합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기업의 근로자들 중에서 위원들을 뽑아서)를 조직하여야 한다. 임시 집행위원회의 주된 업무는 베트남의 노동조합현장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임시 집행위원회는 그 활동 기간 중에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안할 수도 있고 그것을 위해 사용자와 협의할 수도 있다. 임시 집행위원회의 의장은 근로자의 권익과 직접 관련되는 당해 기업의 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 만약 의장이 사용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의견을 유보하고 이 문제를 상급 노동조합 및 기타 분쟁해결을 위한 기구에 회부할 수 있다.

나. 단체교섭

노동조합의 연합체인 베트남 노동총연맹(Vietnam General Confederation of Labor)은 어떤 기업의 모든 근로자를 대신하여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하지 못했다. 단체 협약(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거의 없으며, 노동총연맹의 대표들이 회사의 인사 담당 임원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 노동총연맹이 단체교섭을 효과적으로 행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다. 단체협약

단체협약은 기업의 전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그들의 노동 관계와 관련하여 권리와 의무를 서면으로 작성한 기본 합의서이다.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동법 5장 제44조부터 제54조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나아가 시행령이 이에 대한 세부 사항 사항을 정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회사는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단체협약을 진행해야 하며, 단체협약에 서명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근로자가 협약에 동의하여야 한다.

단체협약은 임금과 근로 조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단체협약에 효력발생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단체협약은 서명 후 10일 내에 사본이 사회복지국(DOLISA)에 제출되어야 한다. 단체협약 기간은 1년부터 3년이며 연장될 수 있다.

7. 노동 분쟁

가. 개별 노동 분쟁

개별 노동 분쟁은 임금, 근로조건, 해고, 징계,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 등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이다. 개별 노동 분쟁을 해결할 권한을 가진 단체는 관련 기업의 노동중재위원회나 노동중재인², 인민 법원(인민 법원의 일부인 노동 법원)이다. 개별 노동 분쟁이 발생하면, 그 분쟁은 노동중재위원회나 노동중재인에게 먼저 회부되고 해결되어야 한다. 만일 노동중재위원회나 노동중재인에 의하여 해결되지 못하면, 각 당사자는 그 분쟁을 심리를 위해 관련 법원에 회부할 수 있다. 개별 노동 분쟁은 노동 파업으로 이어질 수 없다. 노동중재위원회나 노동중재인은 중재에 관한 요청이 수리된 날로부터 3일 내에 중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분쟁 중인 당사자나 그의 대표들은 중재 절차에 참석해야만 한다. 노동중재위원회나 노동중재인은 당사자들에게 문서로 관련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노동중재위원회나 노동중재인 앞에서 증언하기 위한 증인들을 소환할 수 있다.

나. 단체 노동 분쟁

단체 노동 분쟁은 권리에 관한 집단 노동 분쟁(“권리분쟁”)과 이익에 관한 단체 노동 분쟁(“이익 분쟁”)으로 분류된다. 권리분쟁은 노동법 및 관련 규정, 단체협약, 등록된 사내 취업규칙 또는 적법한 규칙이나 계약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이다.

다음과 같은 기관들이 이러한 분쟁을 해결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 (1) 해당 기업의 노동중재위원회 또는 노동중재인
- (2) 시/군급 인민위원회의 의장(군, 시, 지구, 성의 도시)
- (3) 인민 법원(노동 법원)

권리분쟁은 노동중재위원회(또는 노동중재인)에게 회부되며, 중재가 실패하면 해결을 위해 군급 인민위원회 의장에게 회부된다. 두번째 단계도 실패하면 분쟁은 근로자 단체의 결정에 따라 인민 법원에 회부하거나 노동 파업을 개시 할 수 있다. 이익분쟁은 권리분쟁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근로조건 또는 이익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이다. 다음과 같은 단체들이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 (1) 해당 기업의 노동중재위원회나 노동중재인
- (2) 지역 노동중재위원회

² 기업의 노동중재위원회가 동수의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반면, 노동중재인은 지역 수준의 노동관청에서 지명한다. 일부 개별 노동분쟁은 관련 기업의 노동중재위원회나 노동중재인에게 회부되지 않아도 된다.

이익분쟁은 노동중재위원회(또는 노동중재인)에게 우선적으로 회부된다. 중재가 실패하면, 분쟁은 해결을 위해 지역 노동중재위원회에 회부되며, 노동중재위원회가 해결에 실패하면 근로자 단체는 노동 파업을 할 수 있다.

다. 파업

파업은 단체 노동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업무를 일시적이고 자발적으로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파업은 노동조합의 집행위원회에 의해 조직되고 주도되어야 하며, 30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서는 근로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3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서는 최소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적절한 파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한편, 수 개의 기업이 참여하는 파업은 불법이므로, 부문별/산업별 파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어떠한 급여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파업에 참가하지는 않지만 파업 때문에 일할 수 없는 근로자들에게 “작업중지수당(work stoppage allowance)”을 지급하도록 하여, 사용자와 정부가 이를 적절히 이용하여 근로자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사용자들은 노동법원에 제소함으로써 파업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파업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면, 파업에 책임이 있는 노동조합과 개인은 사용자의 손해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용자는 파업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파업의 적법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성공적인 파업에 대한 보복성 이의 제기에 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공공 서비스 분야, 국영 기업, 정부가 국가 경제나 안보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는 파업이 금지된다. 이에 의하여 철도, 해양·항공 운송, 은행, 우편·통신, 전기 생산과 석유 및 가스 산업을 포함한 총 54개 부문에서 파업이 금지되고 있다. 그리고, 수상은 국가 경제나 공공 안보를 위하여 파업을 중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합법적인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징계를 하거나 다른 작업이나 다른 근무 장소로 근로자를 전근시키는 것은 특별히 금지된다. 개정 노동법은 사용자가 파업을 지지하거나 주도한 근로자에게 보복을 하거나 파업에 대항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직장폐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제7장 _ 경쟁법

1. 서설

베트남 정부는 2004년 경쟁법을 제정하고, 2005년에는 경쟁위원회 및 경쟁관리국과 같은 경쟁법 관련 부서를 창설하는 등 경쟁법 관련 법령을 꾸준히 정비하여 왔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우리나라 및 선진국의 경쟁법 운용 경험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있고, 경쟁법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향후 경제발전과 함께 베트남에서도 경쟁법 관련 이슈가 점점 늘어나고, 그에 따라 경쟁법의 집행도 점차 활발해 질 것이 예상된다.

2. 적용대상

베트남 경쟁법의 적용 대상은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 또는 개인(공공용품 또는 공공서비스의 생산, 공급에 종사하는 기업을 포함), 정부독점 사업 및 분야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그리고, 베트남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해외기업,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단체 등이다. 베트남에 영업소가 있는 경우는 물론, 베트남에 영업소 없는 경우에도 베트남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베트남 경쟁법의 적용을 받는다.

3. 위반 행위

베트남 경쟁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행위는 크게 (i) 경쟁제한행위와 (ii) 불공정 경쟁 행위가 있으며, 경쟁제한행위는 다시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 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및 독점적 지위 남용 행위, 경제력집중 행위로 구분된다.

가.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 행위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 행위에는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담합 행위와 담합 행위에 참여하는 자들의 시장 점유율의 합계가 30% 이상에 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담합 행위가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산업구조 합리화, 기술 발전 촉진, 품질 및 기술 표준의 통일적 적용 촉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가 인정된다.

나.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담합 행위

- (1) 다른 사업자의 신규 진입 또는 사업의 확대 제한
- (2) 다른 사업자들을 시장에서 배제
- (3) 입찰 조작을 공모하는 내용의 담합

다. 참여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의 합계가 30% 이상인 경우에게만 적용되는 담합 행위

-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가격 담합
- (2) 시장, 유통망의 분할하는 내용의 담합
- (3) 생산이나 공급에 있어, 제품이나 용역의 양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내용의 담합
- (4) 기술 개발 제한 또는 투자 제한 목적의 담합
- (5) 다른 업체들에게 상품이나 용역의 판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조건을 부과하거나, 또는 다른 업체들로 하여금 당해 계약의 목적과 직접 관계 없는 계약상의 의무를 수락하도록 강요하는 내용의 담합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

2008년 9월 15일 베트남의 15개 보험회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차량 가치의 1.3%에서 1.56%로 인상하기로 하는 협정을 체결하였고, 2008년 10월 1일 4개 보험회사가 추가로 위 협정에 참여하였다. 당시 베트남에서 자동차 보험업을 운영하는 보험회사는 총 25개사가 있었으며, 이 중 위 협정에 참여한 19개사의 시장 점유율은 99.79%이었다. 2008년 11월 다른 보험 회사와 소비자들의 신고에 따라 경쟁관리국(Competition Administration Department)에서 이에 대하여 조사하기로 결정하였고, 조사 결과 위와 같은 협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이러한 협정은 시장 내의 경쟁을 감소시키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고 1조 7,080억베트남동(약 미화 9만불)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4. 시장지배적 지위 및 독점적 지위 남용 행위

가. 독점적 지위

동일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경쟁사업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나. 시장지배적 지위

특정 기업이 관련 시장에서 3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거나 경쟁을 상당한 정도로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여러 기업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함께 행동하는 기업들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1) 2개의 기업이 관련 시장에서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경우
- (2) 3개의 기업이 관련 시장에서 6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경우
- (3) 4개의 기업이 관련 시장에서 7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다. 금지되는 지위 남용 행위

- (1) 경쟁사들을 배제하기 위하여 원가 이하로 상품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
- (2) 부당한 매매 가격 또는 재판매 가격 결정으로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
- (3) 상품 및 용역의 생산 · 유통 제한, 시장 규모의 제한 또는 기술 개발 방해로 인하여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
- (4) 불평등한 경쟁을 목적으로 행위 유사한 거래들에 대해 차별적 조건을 적용하는 행위
- (5) 상품 및 용역의 매매를 위한 계약에 서명한 다른 기업에 (사업 활동을 구속하는 내용의)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의 주된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의무에 동의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6) 신규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5. 경제력 집중 행위

경제력 집중행위에는 흡수합병(merge), 신설합병(consolidation), 인수(acquisition), 합작(joint venture) 등이 포함된다. 경제력 집중 행위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경우와 경제관리국에 신고 의무가 강제되는 경우로 나누어 규율된다.

가. 금지 행위

참여 기업들이 관련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경제력집중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경제력 집중행위 이후에 해당 기업이 여전히 중소기업에 속해 있는 경우와 아래의 예외 사유(이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 (1) 경제력 집중행위에 참여하는 하나 이상의 당사자가 해산 또는 파산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
- (2) 경제력 집중행위가 수출을 증진하거나 사회경제적 개발 또는 기술 발전에 공헌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

나. 신고 의무

참여 기업들의 관련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30%에서 50%인 경우, 해당 기업들의 대표자는 사전에 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즉, 경제력 집중 행위에 참여한 기업들의 관련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30% 미만이거나, 경제력 집중 행위 이후에 해당 기업이 여전히 중소기업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위 금지 행위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6. 불공정 경쟁 행위

경쟁법에서 불공정 경쟁 행위를 통상적인 사업 윤리 기준에 반하는 행위로서 국가의 이익 또는 다른 기업 또는 소비자의 법적 권리 및 이익에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 유형을 포함한다.

- (1) 부정확한 정보 제공 행위
- (2) 경영 비밀 침해 행위
- (3) 사업자에 대한 강요행위
- (4) 다른 기업들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 (5) 다른 기업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6) 불공정 경쟁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 행위
- (7) 불공정 경쟁을 목적으로 하는 판촉 행위

- (8) 사업자단체에 의한 차별
- (9) 불법적인 다단계 판매
- (10) 기타 위 정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정하는 불공정 경쟁 행위

7. 담당 기관

경쟁법에 의하여 경쟁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uncil) 및 경쟁관리국(Competition Administration Department)이 있다.

가. 경쟁위원회

경쟁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서 11인에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경쟁위원회의 위원은 산업무역부(MOIT)의 추천으로 수상이 임명하며, 임기는 5년이고 재임이 가능하다. 경쟁위원회는 경쟁 제한 행위와 관련 민원 해결, 경쟁 제한 행위 관련 사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나. 경쟁관리국

경쟁관리국은 산업무역부 산하 기관으로서, 경쟁제한 행위, 반덤핑 · 반보조금 사건, 소비자보호 사건 등을 담당한다. 경쟁 제한 행위 및 불공정 경쟁 행위 사건에 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경제력 집중 관련 절차를 통제하고, 경제력 집중 행위 면제 신청을 심사한다.

8. 위반 행위 처리

가. 처리 절차

경쟁관리국에서 경쟁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180일의 기간 동안 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를 경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경쟁위원회에서 위반 행위에 대한 결정을 한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들은 경쟁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지방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나. 제재 조치

경쟁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에는 경고 또는 과징금 처분이 있다. 이에 더하여 위반의 성격 및 정도에 따라서 사업등록증 회수, 업무수행 자격증 취소, 위반 행위로 인한 국가, 법인 또는 개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데, 경쟁 제한 행위의 경우에는 최대 직전 회계연도 총 수익의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불공정 경쟁 행위의 경우에는 최대 1억 베트남동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8장_지적재산권

1. 관련 법률 및 협약

베트남에서 지적재산권을 규율하는 주요 법률은 민법(제736조 내지 제757조, 2006. 1. 1. 시행), 지적재산권법[2009. 6. 19. 일부 개정(2010. 1. 1. 시행)] 및 기술양도법(2007. 7. 1. 시행)이다. 이 중 민법은 지적재산권법의 보충적인 법원이다. 베트남이 가입한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약 또한 준수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국제협약으로는 파리협약, 마드리드협약, 스톡홀름협약, 베른협약, 제네바협약 등이 있다.

2. 지적재산권의 의미

베트남의 지적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되며, 산업재산권은 과학기술부의 국가지적재산권국에 의하여 관리되고, 저작권은 문화정보부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산업재산권에는 발명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집적회로 배치 설계, 상표, 지리적 표시, 상호, 영업비밀, 식물변종 등이 있고, 저작권에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이 있다.

기술양도법에서의 '기술' 과 지적재산권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기술양도법에서는 '기술'이란 '재료를 상품으로 만드는 방법이나 그 과정, 노하우'를 의미하되, '수단, 도구와 관련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지적재산권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다.

3. 보호기간

각 지적재산권의 보호기간은 다음과 같다.

- (1) 발명특허 : 출원일로부터 20년
- (2) 실용신안 : 출원일로부터 10년
- (3) 산업디자인 : 출원일로부터 5년(5년 기준, 추가 2회 갱신 가능, 최장 15년)
- (4) 집적회로 배치 설계 : 출원일로부터 10년 또는 (i) 최초 상용일로부터 10년 및 (ii) 창작일로부터 15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 (5) 상표 : 출원일로부터 10년(제한 없이 연속적으로 10년간 갱신 가능)
- (6) 지리적 표시 : 보호 증명서를 받은 때로부터 영속적임
- (7) 상호 : 사용하는 동안 지속됨
- (8) 영업비밀 : 사용하는 동안 지속됨
- (9) 신규 식물 변종 : 보호 증명서를 받은 때로부터 20년 (나무와 덩굴식물의 경우 25년)

- (10) 저작권재산권 : (i) ①영상저작물, ②사진저작물, ③연극저작물, ④응용미술저작물, ⑤무명저작물의 경우 최초 공표일로부터 75년. 단, ①영상저작물, ②사진저작물, ③연극저작물, ④미술저작물이 그 창작일로부터 25년간 공포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창작일로부터 100년간
- (ii) 위 (i)에 규정되지 않은 저작물은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 (11) 저작인접권 : 50년

4. 특허

현재의 기술과 비교하여 새롭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회 및 경제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의 경우 특허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새롭고 창의적인 생각 자체나 과학적 원칙, 교육제도, 컴퓨터 소프트웨어, 수학적 모형 등은 특허권의 대상이 아니다.

베트남에서 특허 출원의 우선권은 베트남의 국가지적재산권국에 특허 출원서를 접수한 일자나, 해당 국제 협약이 있는 경우 그에 의하여 결정된다. 베트남에서 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당해 특허가 기존에 세계 어디에서도 명세서를 통하여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만 특허권이 부여된다. 국가지적재산권국은 예비심사와 출원서 접수 이후에 공보에 출원을 공개하는데, 출원에 대한 실체적 심사는 출원인이나 제3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권의 부여 가능성과 보호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행된다.

5. 상표

① 한 가지 이상의 색으로 기호, 문자, 그림, 도형, 홀로그램 또는 이들을 결합한 시각적인 표식으로 ② 상표 소유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가 다른 사람들의 것들과 구분이 가능할 경우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상표권은 먼저 등록한 자에게 주어진다. 상표권 등록 시에는 상품과 서비스 분류 기준인 Nice Classification을 사용해야 한다. 상표의 우선권이 부여되는 일자는 출원일이지만, 해당 출원을 마드리드협약의 조약국에서 한 경우에는 더 이른 날이 될 수 있다. 국제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이미 등록한 상표는 상표국의 승인을 받아 베트남에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등록되지 않은 상표인 경우에도 고객 수, 판매 지역,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광범위하게 알려진 상표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저명”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다.

베트남에서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 등록 후 5년 동안 해당 상표를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거나, 등록유지비(연장 비용 포함)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상표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고, 매 10년 단위로 계속해서 갱신이 가능하다.

6. 저작권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한 이름을 부여하고 타인이 저작물을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권리인 인격권적 권리와, 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수령하며 저작물을 임대할 수 있는 권리인 재산적 권리로 구분된다.

베트남 민법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저작권 보호도 인정하기는 하나, 제한적으로 ‘베트남에서 최초로 공개 또는 유포되거나, 베트남에서 창작되어 최종 형태를 띤 저작물’에 한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외국에서 창작되어 최종 형태를 띠고, 외국에서 최초로 공개 또는 유포된 저작물의 경우, 베트남에서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하여는 외국에서의 최초 공개일 이후 30일 이내에 베트남에서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달리 국제협약(베른협약 또는 내국인 대우를 하는 것과 관련한 쌍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내국인 대우를 하고 있다.

저작권의 등록은 문화정보부의 저작권 부서에서 담당한다. 등록신청서에는 등록신청인이 저작자라는 증명 또는 저작권에 대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저작권 부서는 등록신청서의 접수 후 15일 이내에 저작권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서면으로 거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7. 지적재산권의 실시 및 양도

가. 산업재산권의 실시 및 양도

산업재산권자는 제3자에게 산업재산권의 사용을 허락(이하 “실시”)할 수 있으며, 산업재산권을 양도할 수도 있다. 산업재산권의 사용을 독점적으로 허락 받은 전용 실시권자는 제3자에게 실시권을 재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지리적 표시는 이러한 실시나 양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재산권의 실시 또는 양도는 서면계약에 의하여야 하며, 그 계약에는 실시 당사자들에 대한 사항, 가격, 권리, 의무, 기간 및 영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특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집적 회로 배치 설계, 상표 등 일부 산업 재산권의 양도는 서면계약의 체결 이외에도 국가지적재산권 국에 등록되어야 하는데, 등록되지 않은 경우 그러한 양도 또는 실시는 당사자인 산업재산권자와 실시권자에게는 구속력을 가지지만, 제3자에게는 동 계약으로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실시권의 경우 실시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산업재산권자의 권리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을 실시권 계약에 포함하는 것이 금지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러한 조건을 위배한 실시권 계약은 무효이다.

- (1) 산업재산권(상표 제외)에 대한 실시권이 부여된 물건에 대하여 실시권자가 기술혁신을 하거나 개량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산업재산권자에게 무료로 그러한 개량물(그 개량물에 대하여 실시권자가 획득한 산업재산권 포함)을 양도할 실시권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

- (2) 산업재산권자가 자신의 독점적 수입지가 아닌 지역(예를 들면, 산업재산권자가 산업재산권의 전용 실시권을 허용하는 지역)에 대한 실시권자의 수출을 직 ·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것
- (3) 산업재산권자 또는 산업재산권자가 지명한 공급자로부터 원자재, 부속품 또는 설비 전체 또는 일부를 매입할 실시권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다만, 실시권자가 생산할 상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에는 제외함)
- (4) 산업 재산권의 유효성 또는 산업재산권자의 실시권한의 유효성에 대한 실시권자의 법적 이익을 금지하는 것

나. 저작권의 양도 및 실시

저작권자는 계약 또는 상속에 의하여 타인에게 저작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

다. 기술양도법에 의한 양도

기술양도법에 의한 “기술 양도”의 의미는 개인이나 기업이 기술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기술 사용권을 실시하거나 재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도와 실시를 모두 포함한다. 기술 양도 대상이 지적재산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일 경우 기술양도법에 의한 양도 또는 실시절차와 동시에 지적재산권법에 따른 양도 또는 실시절차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어떠한 기술이 직업 안전, 고용 위생, 보건권 보호, 천연자원과 환경 보호와 관련된 법에 정해진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경제적 발전에 위해를 끼치고, 국가안보 및 사회질서에 악영향을 가져오는 상품 제조와 관련된 경우,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양도가 허락되지 않는 기술의 경우 혹은 국가비밀과 관련된 경우에는 양도가 금지된다.

기술양도를 하려면 기술양도계약이 필요한데, 기술양도계약은 서면으로 체결될 수도 있고, 그와 동등한 방식인 전보나 텔렉스, 팩스, 데이터 메시지나 법에 의해 허용되는 다른 방식으로 가능하다. 당사자들은 기술양도계약의 언어를 선택할 수도 있다. 베트남에서의 거래는 베트남어 본이 작성되어야 하지만, 베트남어 본과 다른 외국어 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기술양도계약의 당사자들은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양도대금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베트남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외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

특정한 기술, 즉 (i) 국가 이해와 관련된 기술, (ii)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iii)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과 관계된 기술 등(이하 “양도제한기술”)의 경우 기술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술감독국으로부터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 서면 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i) 기술양도계약 체결 요청서, (ii) 신청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서류, (iii) 과학기술부의 규정에 따른 기술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도제한기술의 양도를 위하여는 당사자들이 위와 같은 사전 서면 승인 이외에도 기술감독국으로부터 기술양도허가도 받아야 한다. 기술양도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i) 기술양도

허가 요청서 (ii) 기술감독국의 사전 승인 서면, (iii) 기술양도계약의 당사자들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서류, (iv) 기술양도계약의 원본 또는 사본, (v) 기술양도계약에 첨부된 기술 정보 및 설비에 대한 리스트가 있는 경우 등 리스트이다.

8.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

지적재산권자는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침해금지처분을 내리고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또한, 국가지적재산권법에 침해행위의 확인을 구하여 부지 수색 및 가처분, 생산과 판매의 일시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경고 또는 벌금 부과와 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며, 다른 제재 조치로는 영업자격을 정지, 침해 수단 또는 원자재의 몰수, 강제 복원, 침해로 만들어진 상품의 제거 및 손해배상 등이 있을 수 있다. 벌금은 침해로 만들어진 상품 가액의 1배에서 5배까지 부과되며, 침해행위에 대하여 침해일 이후 2년 이내에 부과되어야 하고, 동 기간이 경과되면 침해자는 제재를 받지 않는다.

개정법(2010. 1. 1. 시행)은 지적재산권 침해자에 대하여 지적재산권자의 신고나 고발이 없이도 벌금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벌금의 상한을 종전 70백만 VND에서 500백만 VND(미화 28,000달러 상당)로 대폭 인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종류의 기관이 특정 액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Decree No. 47).

제9장 _도산법

1. 적용법률 및 적용대상

베트남 도산법(이하 “도산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기업 및 조합이며, 국방, 안보, 금융 및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들에 대한 도산법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정부가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하 도산법이 적용되는 대상을 통칭하여 “채무자”라 한다). 개인은 도산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2. 도산절차 개관

도산법에서 정하는 ‘파산상태’란,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채권자의 청구가 있음에도 변제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채무자가 파산상태에 빠진 경우, 도산 절차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된다.

- (1) 도산절차 개시 신청서 제출
- (2) 법원의 심사
- (3) 도산절차 개시 여부 결정
- (4) 법원의 후속 절차 결정 (법원은 기업회생절차와 기업청산절차 중 어떤 절차를 적용할 것인지 또는 파산선고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기업회생절차를 기업청산절차로 전환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음)

3. 관할법원

지역 인민법원(districts, towns, provincial cities를 관할하는 인민법원)은 당해 지역 상업등기소에 설립 등기가 되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도산절차에 관할권이 있으며, 성급 인민법원(provinces and cities under central authority를 관할하는 인민법원)은 당해 성의 상업등기소에 설립등기가 되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도산절차의 관할권이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성급 인민법원이 지역 인민법원 관할에 속하는 채무자 중 조합에 대한 도산절차를 관할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을 채무자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본점이 소재하는 지역의 성급 인민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4. 도산절차 개시 신청

가. 신청권자

(1) 무담보부채권자 또는 부분담보부채권자

무담보부채권자란,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재산으로 담보되지 않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를 의미하며, 부분담보부채권자란,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재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가지고는 있으나, 그 담보의 가치가 채권의 가치보다 작은 경우 그러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를 의미한다.

채무자가 파산상태에 빠진 것을 알게 된 무담보부채권자나 부분담보부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도산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무담보부채권자나 일부담보부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변제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채무자가 다른 채권에 대하여 파산상태인 경우 도산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도산절차개시신청서에는 신청일,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채무자의 상호 및 주소, 변제 받지 못한 채권의 내용, 변제를 청구한 과정, 도산절차개시 요청의 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2) 노동자대표 또는 노동조합 대표

채무자에게 고용된 노동자가 임금 기타 채권을 지급받지 못하고, 채무자가 파산상태에 빠진 것을 확인한 경우, 노동자대표 또는 노동조합 대표는 채무자에 대한 도산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 도산절차개시신청을 한 때부터 노동자대표 또는 노동조합 대표는 채권자로 간주된다.

(3) 채무자의 대표 또는 채무자 기업의 소유주

채무자의 대표 또는 채무자 기업의 소유주는 채무자가 파산상태에 빠진 것을 알게 된 때에 도산절차개시신청을 할 의무가 있다. 대표 또는 소유주가 채무자가 파산상태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도산절차개시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행정벌 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4) 주식회사의 주주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주주는 당해 주식회사가 파산상태에 빠진 것을 알게 된 때에 도산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 정관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도산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 주주총회의 개최도 가능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보통주의 20%를 초과한 주식을 소유한 주주 또는 주주집단은 도산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

나. 도산절차 개시 신청자의 의무와 책임

도산절차개시신청자는 적시에 완전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명예나 영업

을 손상시킬 목적으로 신청하거나 허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벌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도산절차 개시 결정

가. 결정절차

도산절차 개시 신청권자가 도산절차비용의 예납과 함께 개시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은 도산절차의 개시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법원은 채무자가 파산상태에 있다는 증명이 있을 경우 도산절차 개시 결정을 하며, 법원이 채무자가 아직 파산상태에 빠지지 않았다는 판단을 할 경우 도산 절차 불개시결정을 한다.

나. 공고 및 통보

채무자에 대한 도산절차개시결정은 채무자주소지의 지방신문 및 중앙 일간신문에 3회 연속하여 공고되며, 채무자의 채권자 및 제3채무자에게도 통보된다.

다. 재산관리 및 청산위원회 구성

법원 도산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재산관리 및 청산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가 구성된다. 관리위원회는 파산상태에 빠진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청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관리위원회는 재판집행기관의 집행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원공무원, 채권자대표, 채무자대표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노동조합 대표, 노동자 대표, 전문기관 대표도 위원이 될 수 있다. 관리위원회의 의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 채무자의 모든 현 재산의 목록 작성
- (2) 채무자의 재산사용 감독
- (3)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자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판사에게 임시적인 긴급조치결정을 할 것을 제안
- (4) 채권자 및 채권금액 목록 작성,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수령할 채권액 및 제3채무자의 목록 작성
- (5) 청산절차중인 채무자의 자산, 정보, 회계장부 및 인감의 관리 및 회수
- (6) 법원의 결정에 따른 자산분배계획 이행
- (7) 부인권 발동 시 청산절차중인 채무자의 재산, 재산의 가액 또는 재산 가액의 차액 회수 신청
- (8) 청산절차중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판사의 경매결정이 있는 경우, 그 수행
- (9) 제3채무자로부터 수령한 금액 및 채무자 재산에 대한 경매를 통하여 수령한 금액을 은행계좌에 입금
- (10) 도산절차 진행 과정 중 판사의 기타 결정을 수행함

6. 도산절차 개시 결정 후의 채무자의 행위

채무자는 종전과 같이 영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으나, 관리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다음과 같은 채무자의 행위는 금지된다.

- (1) 재산의 은닉, 폐기
- (2) 무담보부채무의 이행
- (3)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포기
- (4) 무담보부채무에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담보부 채무로 전환

다음 행위는 법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다.

- (1) 재산의 담보제공, 양도, 매매, 증여 또는 임대
- (2) 재산의 양수도 계약을 통한 재산의 양수
- (3) 자금 차입
- (4) 주식의 매매
- (5) 개시 결정 이후 채무자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새로운 채무의 변제, 채무자가 고용한 노동자의 임금 지급

7. 재산보전의 방법

가. 부인권

채무자에 대한 도산절차 개시 신청서 접수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거나, 상대방의 의무에 비하여 채무자의 의무가 큰 쌍무계약을 이행하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효력이 없다. 이러한 행위에 제공된 재산은 채무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무담보부채권자와 관리위원회는 도산절차 진행과정 중에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무효판결을 구할 수 있고,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이러한 경우에 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나. 계약이행의 정지

도산절차 진행 과정 중에 현재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동 계약을 이행 중에 있거나 아직 미이행 중인 경우로서 동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채무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동 계약의 이행은 정지될 수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에 계약의 이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채무자에게 이미 제공한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공한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담보부채권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8. 채권자집회

관리위원회가 채권자명부를 작성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채권자명부 작성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권자명부를 작성한 이후에 재산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재산조사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은 채권자집회를 소집한다.

채권자집회에 참가할 권리가 있는 자는 채권자명부에 등재된 채권자, 근로자대표,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등이다.

채권자집회는 무담보부채권자들의 과반수(단, 출석 무담보부채권자들의 무담보부채권액의 합이 채무자의 총 무담보부채무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함)와 채권자집회의 참가의무자(도산절차개시신청서 제출자 및 채무자의 대표자)가 출석하여야 유효하다.

채권자집회에서는 우선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채무자의 경영 및 재정상황, 재산조사결과 등에 대하여 채권자집회에 보고하고, 채권자의 대표자가 이에 대한 의견과 경영회생방안, 채무상환능력 등을 제시한 후, 채권자집회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출석한 무담보부채권자들의 과반수에 의하여 결의한다.

9. 회생절차

가. 회생절차 적용의 조건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회생절차에 동의하는 경우 제1회 채권자집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무자는 회생계획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회생절차

(1) 법원의 회생계획 심사

법원은 제출 받은 회생계획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채권자집회에 제출하거나 채무자에게 보완을 요구한다.

(2) 채권자집회 회생 결의

법원이 회생계획을 제출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채권자집회가 소집되며, 채권자집회의 결의 요건은 출석한 무담보채권자 과반수의 동의이다.

(3) 법원의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 결정

채권자집회에서 결의된 회생 계획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4) 회생계획 수행에 대한 감독

법원이 제3항에 의하여 인가결정을 하면, 관리위원회는 해산된다. 그 이후에는 채권단이 회생계획 이행에 대한 감독을 하게 된다.

(5) 회생계획 수행의 시한

제3항에 의한 인가결정을 신문을 통하여 공고한 날로부터 3년이다.

(6) 회생절차의 정지

더 이상 파산상태에 있지 않은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모두 이행한 경우 또는 무담보채권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단, 동의한 무담보채권자가 보유한 무담보채권액이 당시까지 지급되지 못한 총 무담보채권액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함)에 법원은 회생절차 정지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는 파산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10. 청산절차**가. 청산절차개시결정**

(i) 손실이 있던 기업에 대하여 회생을 위한 국가의 특별한 조치가 있었음에도 회생되지 않는 경우, (ii) 채권자집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iii)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회생절차의결을 하였음에도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자집회 없이 청산절차개시결정을 할 수 있다.

나. 청산절차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청산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 채권자 등은 청산절차개시결정에 대한 불복권한을 갖는다. 불복기간은 20일이며, 상급법원은 불복서면과 파산관련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고 결정을 내리게 된다.

다. 청산절차의 정지

채무자에게 더 이상 재산배분계획의 이행을 위한 재산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또는 재산배분계획의 이행이 완료된 경우, 법원은 청산절차정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11. 파산선고

가. 파산선고결정을 하는 경우

법원이 청산절차 정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파산선고결정을 하게 된다. 그 이외에도 채무자 또는 채무자인 기업의 소유자나 대표자가 파산비용을 선납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파산선고결정을 한다.

나. 파산선고결정의 고지

파산선고결정은 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동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동 결정을 공고하고 채권자들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다. 파산선고결정 후의 의무

파산선고결정은 개인기업의 소유자나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들의 재산상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라.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불복

파산선고결정을 송부 받거나 통보 받은 채무자 및 채권자들은 파산선고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장 _ 분쟁 해결

1. 개요

베트남은 1980년대 중반부터 점진적으로 혼합시장경제(mixed-market economy)로 전환하면서 분쟁해결에 대한 조직적 접근법에 대한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다. 이전의 계획경제 하에서는 결국 “인민”의 소유였던 기업들 간의 분쟁 해결의 주요 수단은 행정기관의 중재였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제 주체가 다양한 상업거래를 영위하는 독립적인 행위자들로 변모하면서, 분쟁의 발생빈도가 늘어남과 동시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사법제도의 필요성 또한 증가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변화는 최근까지도 형사 사건을 위주로 하고 민사 사건 처리 경험이 부족한 베트남 사법기관에 대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분쟁의 일방 당사자가 외국인 투자자이거나 외국인 투자회사인 경우, 또는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재기관 또는 베트남 법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중재기관에는 베트남 중재기관뿐 아니라 외국 중재기관, 국제 중재기관 또는 양 당사자의 합의로 설치된 중재기관이 포함된다.

2. 분쟁 해결 관련 베트남의 상황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베트남의 법령이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권리 실행 등 절차 부분도 아직 여러 중요한 부분에서 비교적 명확하지 않으며, 사법부의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은 점, 외국 법원의 판결이 집행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등을 유의하여야 한다.

3. 베트남 법원을 통한 분쟁 해결

베트남의 법원 조직은 (i) 최고인민법원, (ii) 지방인민법원, (iii) 군사재판소, (iii) 기타 법률로 정해진 특수법원 등으로 구성된다.

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 중 최상급 기관으로, 하노이, 호치민시, 꽝남-다낭에 위치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베트남의 최고 사법기관으로 최고인민법원장이 수장을 맡고 있으며, 국회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진다. 국회 휴회기간 중에는 국회 상임위원회(“SCNA”)와 대통령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최고인민법원은 (i) 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 (ii) 중앙군사재판소, 형사법원, 민사법원, 경제법원, 노동법원, 행정법원, 최고인민법원 상소법원(하노이, 다낭, 호치민시에 위치), (iii) 사법연구소, 인민법원관보(People’s Court Magazine); 사법신문(Justice

Newspaper), 법원연수원 등의 보조 기관으로 구성되며, 특수법원의 추가 설립은 최고인민법원장의 요청에 따라 국회상임위원회가 설립 여부를 결정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인민법원, 군사재판소 및 기타 특수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 절차를 감독한다. 최고인민법원은 1심 판결 또는 결정에 대한 상소 사건 및 이미 효력이 발생한 판결에 대한 재심 사건을 심판한다.

나. 지방인민법원

지방인민법원은 성급(도시 포함)인민법원(Provincial People's Court)과 지역인민법원(District People's Court)으로 구성된다. 지방인민법원은 국회의 책임하에 있는 최고인민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지방인민법원 및 군사재판소의 내부 조직구성은 여러 면에서 최고인민법원의 조직구성과 유사하다. 각 지방, 도시 및 지구마다 각각 한 명의 수석판사 또는 주심판사가 배속된다. 현재까지 중앙기관의 직속 관할 하에 있는 성급인민법원은 63개로, 그 중 58개는 성(province)에, 5개는 시(city)에 위치하고 있다. 지역인민법원은 668개가 존재한다. 지역인민법원은 전문부서를 구성할 수 없으며 보조기구(사무소) 설치와 함께 특정 사건을 담당할 판사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 인민재판관(people's assessors)

베트남 헌법에 따르면 인민법원 또는 군사재판소에서 개최되는 심리에는 인민 재판관 또는 군 재판관이 배석하여야 한다. 인민 재판관은 사법 집행에 있어 판사와 같은 권한을 갖는다.

베트남 헌법은 모든 인민재판소 인민재판관의 선출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조직에 관한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주의에 충성하는 모든 베트남 시민은 인민위원회(People's Council)에 의해 인민재판관으로 선출 또는 선임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지위로 법정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3명의 판사와 2명의 인민재판관이 배석하며, 소규모 사건은 1명의 판사와 2명의 인민재판관이 담당한다. 모든 판결은 다수결로 이루어지는데, 인민재판관은 변호사나 영미법 체계에서의 배심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심리에서 판사와 동일한 의결권을 가진다.

라. 재판 절차

베트남의 재판 제도는 원칙적으로 2심제로 운영되고 있다. 2심 판결에 대해서 감독심 또는 재심 제도가 있으나, 감독심과 재심의 신청권자가 당사자가 아니라 인민재판소와 인민검찰청이라는 점에서 3심제가 아닌 2심제로 보고 있다. 재판은 경제사건을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당사자주의(adversarial procedures)(영미법)와 상반되는 직권주의(대륙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법에 의해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재판절차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최고인민검찰청 소속 검찰관은 적극적으로 재판에 참여하고 증인을 소환하며 분쟁해결방안에

대해 법정에 조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재판 참가자에는 판사, 인민재판관, 최고인민검찰청 소속 검찰관, 감정증인, 통역관 및 법원서기가 포함된다. 증인이 증언을 마친 후 인민재판관이 증언을 심문하며, 이어 판사의 심문이 진행될 수 있다. 반대심문은 먼저 최고인민검찰청이, 이후 각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에 의해 수행된다. 최고인민검찰청은 당사자들과 함께 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 베트남 민사소송법은 본안 소송이 8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가처분 신청은 5일 이내에 신청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여, 신청서 제출로부터 총 8일 이내에 가처분 결정을 내리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가처분 집행은 가처분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무는 이러한 법률의 규정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으며, 현실적으로 민사 본안 소송은 2년 내지 3년이 소요되며, 가처분 결정은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된다.

가처분, 가압류 등 보전 처분

베트남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법원은 권리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각종 보전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베트남 법원의 실무상 보전 처분은 매우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명하여 지는데, 법원이 쉽게 권리를 보호할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4.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가. 개관

베트남에서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는 잘 정비되어 있어 특히 상사 분쟁과 관련하여서는 법원을 통한 분쟁 해결보다 낫다는 평을 듣고 있다. 중재는 무역과 관련된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베트남 상공회의소(Viet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의 외국무역중재위원회(Foreign Trade Arbitration Committee)가 1963년 4월 30일 국무회의령 No.59/CP 에 의거 하노이에서 설립되었고, 1964년 10월 5일 국무회의령 No.153/CP에 의거하여 베트남 상공회의소에 부속된 별도의 해양분쟁위원회(Maritime Arbitration Committee)가 구성되었다. 베트남인인 당사자들간의 분쟁은 베트남법에 의해 해결된다. 국적이 상이한 당사자들간 분쟁에 대한 중재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선택한 국가의 법을 적용한다.

단, 이 경우, 당해 외국법의 적용이 베트남 법의 기본 원칙과 상반되지 않아야 한다. 당사자들이 준거법 선택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준거법을 선택한다.

당사자들이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법에 의해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중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베트남 국제중재센터 및 상사 중재법

상사중재센터는 중재인 자격을 갖춘 5인 이상의 베트남 시민에 의해 설립 가능하며, 베트남 변호사협회(베트남어로 “Hoi Luat Gia Viet Nam”)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상사중재센터의 설립 허가는 베트남 법무부의 소관이다. 1993년 외국무역중재위원회 및 해양중재위원회가 베트남 국제중재센터(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로 통합되었다. 이후, 베트남 국제중재센터는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당사자들과 관련된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 베트남 국제중재센터는 베트남 국제중재센터 조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1993년 4월 28일자 총리 결정 No.204/TTg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베트남 국제중재센터 규정상, 베트남 국제중재센터는 베트남 상공회의소에 의해 설립된 비정부기구로 정의된다. 베트남 국제중재센터는 무역계약 및 국제투자계약을 포함하는 국제경제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 및 “국내사업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청문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국내분쟁의 청문 외에, 베트남 국제중재센터는 특별히 1인 이상의 관련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또는 당사자들이 해당 분쟁을 베트남 국제중재센터에 회부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의 분쟁 해결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특히 상사 중재와 관련 2010년 6월 17일에는 신 상사중재법(Law on Commercial Arbitration)이 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며 베트남에서의 상사 중재와 관련된 최초의 법령인 ‘Ordinance on Commercial Arbitration of 2003’을 대체하게 된다. 2011년 시행 예정인 신 상사중재법 하에서는 종전과는 달리 (i) 분쟁해결을 위해 중재판정부에게 증거 수집 및 증인 소환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 (ii) 중재판정부의 가처분, 금지명령 등 Injunctive Relief가 가능해 졌다는 점, (iii) 국제 중재 기관의 베트남내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의 운영이 가능해 졌다는 점, (iv) 분쟁해결을 위한 준거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해당 분쟁해결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준거법을 채택할 수 권한이 부여됐다는 점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신 상사중재법의 시행에 따라 상사중재를 이용한 분쟁 해결은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 중재 대상 및 중재 합의

중재는 재화의 거래 및 서비스의 제공, 배급, 무역, 대리, 위임, 임대, 임차, 금융리스, 건설, 기술, 라이선싱, 컨설팅, 투자, 금융, 은행업, 보험, 탐사, 개발, 방송, 내륙운하 및 철도 운송, 법에 의해 규정된 기타 상업활동을 포함하는 상업활동으로 비롯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당사자들이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중재를 선택하고 그 이후 일방 당사자가 당해 분쟁을 법원에 회부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들의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중재 선택에 대한 합의가 무효로 밝혀진 경우에 한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다음의 경우 당사자들의 중재 관할 합의는 무효이다.

- (1) 비(非)상사문제로 발생하는 분쟁의 경우
- (2) 합의를 체결한 자가 권한 없는 자인 경우

- (3) 합의서를 체결한 자가 완전한 법인격을 갖추지 않은 자인 경우
- (4) 당사자들 간 합의서가 분쟁의 주제를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거나, 특정 중재분쟁이 합의서에 언급되어 있지 않거나, 당사자들이 보충합의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
- (5) 중재 선택에 관한 당사자들 간 합의가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 (6) 합의서를 체결한 자가 협박 및 사기에 의해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및 중재판정부가 첫 청문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중재 선택에 관한 합의를 선언하도록 요청한 경우

라. 중재절차 및 중재판정

분쟁은 중재센터 또는 분쟁 당사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중재판정부에 의해 해결된다. 당사자들이 중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분쟁이 중재센터가 구성한 중재판정부에 의해 해결되는 경우에는 중재센터의 장이, 당사자들이 구성한 중재판정부에 의해 해결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측의 요청에 의해 성급인민법원이 중재인(들)을 임명한다. 중재인은 중재센터의 중재인 목록에서 선임할 수 있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분쟁의 경우에는 외국인 중재인도 허용된다. 단, 외국인 중재인은 자국 법에 따른 적법한 자격을 갖춘 중재인이어야 한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분쟁의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에 의한 기타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관련 당사자의 권리 및 적법한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분쟁을 담당하는 중재판정부가 위치하고 있는 당해 지역 성급인민법원에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긴급중간조치를 구하는 서면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1) 훼손되거나 훼손될 위험이 있는 증거 및 증빙의 안전한 보호
- (2) 분쟁대상 재산 목록 작성
- (3) 분쟁대상 재산 내용의 양도 또는 변경 금지
- (4) 분쟁대상재산의 봉인 및 보관
- (5) 은행계좌 동결

긴급중간조치를 구하는 당사자는 당해 조치의 신청 사유에 대한 만족스러운 증거를 제출하고, 긴급중간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각각의 법원의 결정에 대한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긴급중간조치의 대상인 분쟁대상재산의 가액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청구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액을 상회할 수 없다. 중재판정은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갖는다. 당사자는 성급인민법원에 판정취소요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법원은 분쟁의 실제적 사안은 검토할 수 없으며, 당해 판정취소 요청의 유효성 및 다음과 같은 인가된 취소사유만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1) 중재조항이 부재하는 경우

(2) 중재조항이 무효인 경우

(3) 중재판정부의 구성 및 절차의 이행이 당사자들의 합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4) 분쟁이 해당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경우

(5) 분쟁해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중재인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중재판정이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최고인민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중재판정은 민사판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집행이 가능하다.

마.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1958년 뉴욕협약(“뉴욕협약”)에 따라, 현재 베트남에서는 외국중재판정도 집행 가능하다. 민사소송법은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협약의 가입국 또는 호혜주의 원칙에 근거해, 베트남 법원이 베트남에서 외국중재판정을 승인 및 집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중재판정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은 당사자(“신청인”)는 법원수수료를 납부하고, 법무부를 통해 베트남 법원에 판정 승인 및 집행 허가를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패소한 측(“피신청인”)이 베트남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거나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신청 당시 분쟁 대상 재산이 베트남에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상기 요청서에는 양 당사자 및 신청인의 베트남 내 법률 대리인(해당 경우)의 이름 및 주소, 또는 관련재산의 베트남 내 주소와 신청인의 요청내용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해당 협약에 따라 규정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국제협약이 첨부서류를 규정하지 않거나 당해 사안과 관련한 협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베트남어 원본 또는 베트남법에 따라 번역 공증을 받은 외국어 중재판정의 인증된 사본 및 중재합의서 또는 중재조항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베트남 법원은 외국의 중재인이 판결한 분쟁의 실체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 다음의 경우에는 피신청인은 당해 중재판정의 무효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i) 중재합의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을 피신청인이 입증하는 경우, (ii) 준거법이 선택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들이 중재를 신청하기로 선택한 국가의 법에 의해,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국가의 법에 의해 중재합의서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 (iii) 신청인이 중재인 임명이나 향후 절차에 관한 통지를 기한 내 수령하지 못한 경우,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해 당사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 (iv) 중재판정의 당사자가 중재에 동의하지 않은 사안이거나 중재판정이 당사자들 간 중재합의 내용을 초과하는 경우 (v) 법원이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수 없었다고 결정하거나, 해당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베트남의 기본원칙과 모순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외국중재판정은 승인 및 집행될 수 없다. 반면, 승인되어 집행이 가능해진 외국중재판정은 베트남 법원이 내린 판결과 법적으로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불가 판결에 대해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에 항소하고자 하는 자는 성급인민법원이 당해 판결을 내린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하여야 한다.

INVESTMENT & BUSINESS GUIDE 시리즈 목록

국가	제목	법무법인	저자	사무소
중국 I	중국 투자·기업	광장	이상기 오승룡 최광호	광장-북경 중국 북경시 조양구 삼원교 서광서리 갑1호 동역대하(제3차업)B좌 1802실 86-10-5822-0747
중국 II	중국 세법	세종	최병선 장대훈 정천주	세종-북경 중국 북경시 조양구 소운로 36호 국항빌딩 10층 1008호 86-10-8447-5343
중국 III	중국 공정거래	세종	최병선 장대훈 김도현 (前세종 변호사)	세종-상하이 중국 상해시 장녕구 선하로 319호 원동국제광장 A동 8층 808호 86-21-6235-0411
베트남 I	베트남 투자·조세·노무	울촌	양은용 배용근 강수구 한윤준 안우진 Tran Anh Dung	울촌 - 하노이 Unit M01, Atlanta Place, 49 Hang Chuoi, Hai Ba Trung District, Hanoi, Vietnam 84-4-3972-8123 울촌 - 호치민 Unit 03, 4th Floor, Kumho Asiana Plaza, 39 Le Duan St., Ben Nghe Ward, Dist.1, Ho Chi Minh City, Vietnam. 84-8-3911-0225
베트남 II	베트남 부동산·건설	지평지성	김상준 변희경 한승혁 김주현	지평지성 - 하노이 Suite 1003, 10th Fl., Daeha Business Center, 360 Kim Ma St., Ba Dinh Dist., Hanoi, Vietnam 84-4-6266-1901 지평지성 - 호치민 #1605, Centec Tower, 72-74 Nguyen Thi Minh Khai Street, Ward 6, District 3, Ho Chi Minh City, Vietnam 84-8-3910-7510

양은용(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

학 력

2004 : 미국 UCLA 법학대학원 법학석사 (LL.M.)

1997 : 사법연수원 제26기 수료

1994 :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1993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경 력

2000~현재 : 법무법인 율촌

2007~현재 : 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 이사

2007~현재 : 법무법인 율촌 베트남 법인 대표

2004~2005 : Allen & Overy 홍콩지사 파견근무

1997~2000 : 육군 법무관

배용근(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

학 력

2006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2005 : 미국 UC San Diego Business Academy Course 수료

2003 : 사법연수원 32기 수료

2000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1998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경 력

2007~현재 : 법무법인 율촌

2007~2008 : 한국증권업협회 증권연수원 강사

2006~2007 Asia Law 2006 및 2007에 Finance-Specialized Lawyer로 소개

2003 :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 강사

2003~2007 : 법무법인 세화 금융팀장

강수구(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

학 력

2007 : 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2004 :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2000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경 력

2008~현재 : 법무법인 율촌

2007~2008 : 법무법인 세화 변호사

한윤준(법무법인 율촌 소속 미국변호사)

학 력

1999 : Indiana University at Bloomington, School of Law (LL.M.)

1993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1988 : 서울고등학교

경 력

2008~현재 : 법무법인 율촌

2006~2008 : 법무법인 로고스, 베트남 지사 책임, 미국변호사

2003~2006 : 사이베이스 사내변호사, 법무팀, 동남아 법무담당

2001~2003 : 법무법인 로고스, 해외법무팀, 미국변호사

2000~2001 : 법무법인 세창, 미국변호사

1999~2000 : 삼성물산 상사부문 법무팀 사내변호사

안우진(법무법인 율촌 소속 미국변호사)

학 력

2007듀크대학교 로스쿨 (J.D.)

1999고려대학교 법학과 (1999)

경 력

2010~현재 : 율촌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 근무

2008~현재 : 법무법인 율촌

2007~2008 : 채드본앤드파크

2000~2004 : KT

Tran Anh Dung(법무법인 율촌 소속 베트남변호사)

학 력

2003~현재 : Lawyer Practice-Legal Academy (Certificate of Lawyer training)

2000 : 베트남 하노이 법대

경 력

2008~현재 : 법무법인 율촌

2007~2008 : 법무법인 세화 외국변호사

2004~2007 : Dzungsr & Associates

2003~2004 : Vision & Assicates

2001~2003 : Hoang Long 로펌 Legal Consultant

이 책자에 실린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 견해로서
법무부의 공식견해는 아님을 밝힙니다.

Investment & Business Guide

인 쇄	2010년 10월
발 행	2010년 10월
발 행 처	법무부 국제법무과
주 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전 화	02) 2110-3661
팩 스	02) 504-1378
전자우편	ildhd@moj.go.kr
인 쇄	에이앤에프 커뮤니케이션 02) 756-5171

발간등록번호

11-1270000-000612-01

INVESTMENT & BUSINESS GUIDE

해외진출 우리기업을 위한 사례중심 현지법령해설서